울 산 광 역 시 남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공 보

제1590호 2021. 4. 2.(금)

조 례

○울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1163호 [울산광역시 남구 정책연구결과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 3

○울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1164호 [울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7

○울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1165호 [울산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22

○울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1166호 [울산광역시 남구 문화예술창작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26

○울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1167호 [울산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50

○울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1168호 [울산광역시 남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54

규 칙

○울산광역시 남구 규칙 제603호 [울산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58

【 안 내 문 】

□ **남구 전자공보는 매주 금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매주 목요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구 전자공보 확인 방법**

⇒ **구 홈페이지(www.ulsannamgu.go.kr) → 남구소식 → 남구공보에서 열람**

회 람								

발행: 울산광역시 남구 편집: 기획예산과(☎ 226-5404 행정 5404)

고 시

○울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1-48호 [도로명주소 고시]..... 72
○울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1-49호 [울산광역시 남구 빈집정비계획 결정 고시].... 82

공 고

○울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1-517호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생활비용보조사업) 시행 공고]..... 97
○울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1-534호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82
○울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1-547호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97
○울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1-548호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00
○울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1-550호 [울산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18
○울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1-55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사전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24
○울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1-554호 [울산광역시 남구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26
○울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1-557호 울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142
○울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1-559호 [울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69
○울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1-560호 [울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90
○울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1-561호 [울산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0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남구 정책연구결과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4월 2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울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1163호

울산광역시 남구 정책연구결과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정책연구결과 공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용역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가 시행하는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용역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용역”이란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의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으로서 학술·연구·조사·검사·평가·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2. “기술용역”이란 건설공사의 설계·감리·측량·시험을 제외한 계획·조사·자문·검토 등 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용역을 말한다.

3. “용역 수행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와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기획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5. “주관부서”란 용역을 추진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가 추진하는 1천만원 이상인 학술용역 및 3천만원 이상인 기술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없이 예산부서의 실무심의로 대체한다.

1. 다른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한 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시비로 시행하는 용역

3. 기술·전산·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

4.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 전염병 예방 및 구제 등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과제의 선정) 주관부서는 용역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 등을 통하여 국가, 타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에서 이미 추진한 연구실적·자료, 유사 용역사례 등의 중복 여부

2. 각종 중·장기발전계획과의 연계성

3. 용역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용역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 종합 활용방안

제5조(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필요성, 타당성 및 유사·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2. 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방행정 및 정책·학술·기술·연구용역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기획재정국장과 주관부서 국·소장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심의 대상과 관련된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과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재직한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본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심의요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자체심사 후 위원회 회의 개최 10일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심의 의결서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제10조(용역실명제) ①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용역실명 대상 공무원은 주관부서의 장, 담당 및 주무관으로 한

다. 다만, 직속기관과 사업소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주관부서의 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결과의 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의 진행상황을 용역 기간에 1회 이상 점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진행상황 점검 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 기간이 2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용역 수행자가 계약 이행을 게을리하거나 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 수행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용역결과의 평가) 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과 평가전문위원은 용역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용역결과를 평가하고 용역 평가서(별지 제4호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용역결과의 공개) 구청장은 용역 종료 후 용역결과물을 구 홈페이지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14조(용역결과의 활용) 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용역 활용현황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 성과품을

구 용역자료실에 제출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용역결과가 시책개발 및 사업시행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엄수) 용역 심의에 참여한 위원 및 관계자는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면>

용역 심의 요청서

제출 번호	제 호

용역명	

제 출 자	
제출연월일	년 월 일

<table>
<tr><td>용역의
개 요</td><td colspan="5">○ 용 역 명 :
○ 용역기간 :</td></tr>
<tr><td rowspan="3">용 역
사업비</td><td colspan="5">○ 용역 예정금액 : 천원(국비 천원, 시비 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td></tr>
<tr><td>요구예정 시기</td><td>회 계 별</td><td>정책단위</td><td colspan="2">편 성 목</td></tr>
<tr><td>20 년 당초예산
20 년 제 회 추경</td><td>일반회계
○○특별회계</td><td></td><td colspan="2"></td></tr>
<tr><td>용역 발주
및
수행 방식</td><td colspan="5">○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시 사유를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자문형</td></tr>
<tr><td>기존 용역과
유사・중복성</td><td colspan="5">○ 유사・중복성 여부 :

○ 기존 용역과 달리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td></tr>
<tr><td rowspan="2">담당자 등</td><td>주관부서</td><td>과제담당관</td><td>담당자</td><td>전 화</td><td>비 고</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able>

용 역 명

□ 용역의 목적과 필요성

○

○

□ 과업의 주요 내용

○

○

○

□ 용역 기간 :

□ 용역 수행 방법

○

○

□ 유사 용역사례(최근 5년간)

○

○

□ 용역 결과물 활용계획과 기대효과

○

○

□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

○

○

※ 첨부 : 과업지시서, 원가계산서 각 1부.

[별지 제2호서식]

용역 심의 의결서

(년 월 일)

연번	심의안건	심 의 결 과			심사의견	비 고
		원안가결	조건부승 인	부결		

※ 심의결과는 심의결과란에 ○표로 표시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란에 기재한다.

용역 심의위원 : (직위) (성명) (서명)

[별지 제3호서식]

용역 진행상황 점검결과서

<table>
<tr><td>용 역
개 요</td><td colspan="5">○ 용역명 :
○ 주요 내용
-
-</td></tr>
<tr><td>용역계약</td><td colspan="5">○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계약금액 : 천원
○ 계약(용역)기간 :
○ 수 탁 자 :</td></tr>
<tr><td rowspan="3">점검일
및
점검자</td><td rowspan="2">점검일자</td><td rowspan="2">점검자</td><td colspan="2">확 인 자</td><td rowspan="2">비 고</td></tr>
<tr><td>○○담 당</td><td>과제담당관</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점검결과</td><td colspan="5">○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 일정 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 달성 가능성
-
○ 과업 지시 내용에 대한 충실성
-
○ 용역 진행상 특이 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
-</td></tr>
<tr><td>조 치 한
사 항</td><td colspan="5">○
○
○</td></tr>
</table>

[별지 제4호서식]

용역 평가서

정책연구 과제명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주관부서/ 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	
연구방식	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		
연 구 자 선정방식	1. 경쟁입찰( ) 2. 수의계약( )	연구기간	~ (개월)
주 요 연구결과			

평가항목	평가 의견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 연구목표의 달성도 (용역목적과의 부합성)						
2. 연구추진방식의 적절성(정책방향과 일치성, 연구과제의 독창성, 추진방법의 적정성 등)						
3. 계약내용에의 충실성(예산적정 사용 및 계획일정 부합도 등)						
4. 용역결과의 활용 가능성 (정책반영 가능성 등)						
평가 결과(총평)						
평가자	○ 평가전문위원(소속 및 성명) : ○ 과제담당관 (소속 및 성명) : ○ 담당공무원 (소속 및 성명) :					

[별지 제5호서식]

용역 활용현황

연구과제명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주관부서/ 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	
연구기간		용역비	천원
연구목적			
연구주요내용			
활용목적			
활용방안			
기대효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용역 과제의 투명성 제고 및 용역사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정사항을 반영한 조례명 개정

:「울산광역시 남구 정책연구결과 공개 조례」→「울산 광역시 남구 용역 관리 조례」

나. 용역 개념 정의 및 적용 범위, 과제의 선정(안 제2조~제4조)

다.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안 제5조~제6조)

라. 위원의 제척·회피, 해촉 및 위원회 운영(안 제7조~제9조)

마. 용역실명제 및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안 제10조~제11조)

바. 용역결과의 평가·공개·활용 등(안 제12조~제15조)

사. 별지서식 신설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4월 2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울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1164호

울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전담부서의 지정) 영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3조의 제목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적극행정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적극행정위원회”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

②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조제2항 중 “영 제6조”를 “제2조의2”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의2(전담부서의 지정) 영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3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① ---------- 적극행정위원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영 제7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영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지원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 ②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와 우수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5.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제5조(사무직원) ①(생 략)	제5조(사무직원) ①(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하고, 서기는 적극행정 총괄담당으로 한다.	② ----- 제2조의2----------.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 사항 반영을 위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명칭을 적극행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확대하며, 적극행정 전담부서 및 책임관을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전담부서 및 책임관 지정 조항 신설(안 제2조의2)

- 업무의 총괄·조정을 위해 적극행정 업무 담당부서를 전담부서로 지정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

나. 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3조)

- (기존)울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 (변경)울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위원회

다.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4조)

- 위원회의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추가
- 자문 및 의견제시 심의·의결 시 전문가 의견 청취 의무화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4월 2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울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1165호

울산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절의 제목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제8조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제9조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절 재산분	제1절 사업소분
제8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8조(세율) ---------- -- 사업소분---------- ----------.
제9조(신고의무)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의무) 사업소분------ ---------- ---------- ---------- ---------- ---------- ----------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의 개편 및 납세자가 납부해야 하는 주민세 세세목의 종류가 간소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세 세세목의 명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함

- ‘재산분’의 명칭을 ‘사업소분’으로 개정(안 제8조 및 제9조)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남구 문화예술창작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4월 2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울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1166호

울산광역시 남구 문화예술창작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문화예술창작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5조에 따라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예술창작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창작촌”이란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과 진흥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조성한 문화시설을 말한다.
2. “작업실”이란 예술인의 창작활동 또는 주민대상 문화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을 말한다.
3. “입주”란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이 작업실을 전용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료”란 구청장 또는 사용자가 제공하는 공연물 또는 전시물을 관람함에 따라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수강료”란 구청장 또는 사용자가 운영하는 각종 강좌를 수강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문화예술창작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2장 시설운영

제4조(시설) 문화예술창작촌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작업실
2. 강의실
3. 사무실
4. 전시 및 판매공간
5. 공연장
6. 다목적실 및 그 밖의 편의시설

제5조(사업) 문화예술창작촌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창작촌 운영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2. 입주작가의 예술창작 지원

3. 주민을 위한 문화예술 체험교실

4. 문화예술관련 주민이용 활동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5. 문화예술 창작활동 관련 공간 및 정보자료 제공

6. 소규모 공연·전시 또는 집회 공간 제공

7.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문화예술창작촌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2와 같다.

② 구청장은 시설의 개·보수 등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 개시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울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또는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 부터 게시할 수 있다.

제7조(작업실) ① 작업실은 개인작업실과 공동작업실로 구분한다.

② 작업실의 운영시간은 24시간 개방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3장 입주작가 선정 및 지원

제8조(입주작가 선정) ① 구청장은 입주작가를 공개모집하고, 울산광역시 남구 문화예술창작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② 입주작가를 선정할 때에는 10일 이상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모집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의 창작활동이 활발한 국내·외 문화예술 작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

로 한다.

1. 문화·예술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한 활동가 및 창업가

2. 시설의 기능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운영 및 창작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제9조(입주기간) 입주작가의 입주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입주작가의 지원 및 관리) ① 입주작가는 시설이용과 운영 프로그램에 따른 비용은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문화예술창작촌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공공요금 등 별도의 실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2조에 따라 강제 퇴실당한 작가에 대하여는 각종 지원을 중지한다.

③ 작업실 이용률 등이 저조한 작가에 대하여는 입주작가로서의 각종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입주작가 의무) 입주작가는 작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실을 다른 작가 등에게 대여하는 등 원래 목적과 다르게 이용해서는 안 된다.

2.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반입한 각종 물품(작품, 기구, 비품 등)의 보관, 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4. 그 밖에 구민·학생 등의 현장체험·교육 등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입주작가는 작업실을 월 15일 이상 이용하여야 한다. 단, 국내외 전시회 등으로 소명사유 제출 시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2조(입주취소 및 계약 해지) ① 입주작가는 입주계약기간 만료일까지 퇴실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자진 퇴실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미리 통보하고 퇴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입주작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퇴실을 명할 수 있다.

1. 제11조 미 이행 및 입주 계약사항 위반이 발생한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2항의 퇴실명령을 최소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입주작가가 퇴실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강제 퇴실 조치할 수 있다.

제4장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제13조(사용허가 등)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치·종교·집회 및 친목을 위한 공연 또는 행사

2.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사용자가 구청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경우

5. 국가, 울산광역시 또는 구가 공공목적을 위하여 긴급히 해당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6.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16조(사용료 및 사용시간) 장생포문화창고 사용자는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문화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료 및 사용시간은 별표 3과 같다.

제17조(사용료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감면

가. 국가, 울산광역시 또는 구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나.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반액 감면(사용료의 50퍼센트)

가. 구가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 행사

나. 남구문화원이 주관하는 행사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감면 신청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료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료를 낸 사람이 문화시설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다음 각 목의 날까지 반환 신청을 한 경우

가. 사용 7일 전: 사용료 전액

나. 사용 5일 전: 사용료의 80퍼센트

다. 사용 1일 전: 사용료의 50퍼센트

라. 사용 개시일 이후: 남은 일수 사용료의 50퍼센트

2. 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사용료 전액

3.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료 전액

②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부대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허가를 얻어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부대설비가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시에는 그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끝나는 즉시 추가 설치한 부대설비를 원상복구한 후 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0조(관람료 등) ① 구청장 및 사용자는 시설의 공연, 전시 등을 할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공연·전시의 특성에 따라 차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 감면기준은 별표 4와 같으며,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람료 감면율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1조(수강료 등) ① 구청장 및 사용자는 각종 강좌 개설시 수강료 및 재료비를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에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하여야 한다.

1. 강의 시작일 전날까지 수강자가 취소하는 경우: 전액 환불

2. 강의 시작일 이후 구청장 또는 사용자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 전액 환불

3. 강의 시작일 이후 수강자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 수강일수만큼 일할 계산 후 차액 환불

④ 수강료를 환불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22조(입장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시설 내에서 흡연을 하거나 만취한 사람

3. 인화물질 등 관람과 안전에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안전과 질서를 위하여 구청장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장 문화예술창작촌 운영위원회

제23조(문화예술창작촌 운영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문화예술창작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문화예술창작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예술창작촌 주요 사업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2. 입주작가 선정 및 퇴실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문화예술창작촌 운영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업무 담당국장 및 담당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문화·예술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예술창작촌 운영에 관한 심의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주무관으로 한다.

제26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해당 안건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2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장 운영의 위탁

제28조(위탁)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창작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29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수탁협약을 체결한 경우
2. 수탁자가 협약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문화예술창작촌 운영목적에 위반되는 사업을 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유로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협약이 취소되거나 수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관련 장비, 비품 등을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30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현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운영비 집행 관련 장부 등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

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관계규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하여진 지원·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별표 1]

문화예술창작촌의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시설의 명칭	위 치
장생포 아트스테이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139번길 5-15
창작스튜디오 장생포고래로 131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131
새미골 문화마당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197번길 1
신화예술인촌	울산광역시 남구 여천로80번길 15
장생포문화창고(A-FACTORY)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110

[별표 2]

문화예술창작촌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제6조 관련)

시 설 명	운영시간	휴관일	비 고
장생포 아트스테이	09:00 ~ 18:00	매주 토요일 및 공휴일	
창작스튜디오 장생포고래로 131			
새미골 문화마당			
신화예술인촌			
장생포문화창고(A-FACTORY)	10:00 ~ 21:00	매주 월요일, 1월1일, 설·추석 당일	

<비 고>

1. 프로그램 운영사항에 따라 휴관일 및 운영시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 관공서, 학교, 그 밖의 단체로 부터 미리 신청이 있을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별표 3]

장생포문화창고 사용료 및 사용시간(제16조 관련)

1. 문화시설

(단위 : 원)

구 분	위 치	규 모	기준	사용료(VAT포함)		비고
				공 연	행 사	
공연장	6층(북측)	120석	오전	50,000	70,000	◦ 1일 : 10:00 ~ 18:00 ◦ 오전 : 10:00 ~ 14:00 ◦ 오후 : 14:00 ~ 18:00 ◦ 야간 : 18:00 ~ 21:00
			오후	100,000	120,000	
			야간	100,000	120,000	
회의·작업실	5층(남측)	21.87㎡	오전	10,000		
			오후	10,000		
			야간	10,000		
소연습실	5층(북측)	27.5㎡	오전	10,000		
			오후	10,000		
			야간	10,000		
다목적실	4층(남측)	276.25㎡	1일	100,000		
전시장	3층(북측)	276.25㎡	1일	100,000		

※ 비 고

◦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시 당회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하고 1시간 이상 초과시는 다음회 사용료 전액을 가산한다.

◦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치 등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 시에는 해당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를 부과한다.

◦ 다음 날 공연준비를 위한 23:00시 이후 사용 시에는 야간 사용료의 50퍼센트를 부과한다.

◦ 다목적실·전시장 대관시간을 21:00시까지 연장 시에는 1일 사용료의 50퍼센트를 부과한다.

2. 부대시설

(단위 : 원)

구 분 / 시설명		기 준	사 용 료 (VAT포함)	비 고
건 반		1회	20,000	
프로젝트 (스크린포함)		1회(6,000ANSI)	20,000	◦ 이동형
		1회(8,000ANSI)	30,000	◦ 고정형(공연장)
마이크	유선	1개/추가	5,000	◦ 2개 기본
	무선	1채널	10,000	◦ 무선마이크 4채널이상 운영시 RF 운영자별도
이동음향세트		1회	20,000	◦ 장생포문화창고에 한함
보면대		1회/10개	10,000	
덧마루		1회/1개	2,000	
냉・난방비		1회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	

※ 비 고

◦ “1회”란 오전·오후·야간 중 하나를 말한다.

◦ 공연장, 다목적실, 전시장 부대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부과한다.

◦ 공연장의 음향·조명시스템 운영인력은 시설사용자가 부담한다.

[별표 4]

관람료 감면기준(제20조 관련)

감 면 대 상	감면비율	비 고
10명 이상이 단체로 관람권을 구입하는 경우	20퍼센트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울산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30퍼센트	최대 5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관람권을 구매할 경우	50퍼센트	

※ 관람료 감면기준 적용은 구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한함.

[별표 5]

수강료 감면기준(제21조 관련)

감 면 대 상	감면비율	비 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100퍼센트	수강료는 1인2강좌 이내감면 허용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100퍼센트	
「울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100퍼센트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50퍼센트	
만 65세 이상 노인	50퍼센트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 소지자(본인)	20퍼센트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울산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50퍼센트	
임산부(수강등록 당시 기준)	50퍼센트	

※ 수강료 감면기준 적용은 구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한함.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신청인	주소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폰)	
	성명 (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용시설 (변경내용)	문 화 시 설	공연장(6층), 회의·작업실(5층), 소연습실(소, 5층), 다목적실(4층), 전시장(3층)		
	부 대 시 설			
사용기간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일간)			
사용목적 (변경사유)				
첨 부	1. 행사 또는 공연계획서 2. 전시작품 목록(전시의 경우에 한정함) 3. 프로그램 안내서			

「울산광역시 남구 문화예술창작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주 소 :

성 명(대표자) :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뒷면)

서 약 서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본인(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은 물론, 만약 이를 위반 시에는 어떤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다 음

가.「울산광역시 남구 문화예술창작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시설 사용(변경)허가 사항을 준수한다.

나. 문화시설 및 부대시설을 보호·유지하고 이를 훼손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한다.

다. 사용기간 동안 행사요원 및 관람자 등에 대한 안전 관리와 그로 인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년 월 일

서 약 자 :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시설 사용(변경) 허가서

신청인	주소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폰)	
	성명 (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용시설 (변경내용)	문화시설			
	부대시설			
사용허가 기 간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일간)			
사용허가 목 적				
비 고				

「울산광역시 남구 문화예술창작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른 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에 대하여 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인)

[별지 제3호서식]

사용료 감면 신청서

신 청 인	주소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폰)	
	성명 (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시, 공연, 행사의 명칭				
사 용 허 가 기 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회 시간)			
사 용 시 설	문화시설			
	부대시설			
감 면 신 청 사 유				

「울산광역시 남구 문화예술창작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주 소 :

성 명(대표자) :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 하

[별지 제4호서식]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 청구서

신청인	주소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폰)	
	성명 (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용료 기납부액				
반환청구액				
취 소 사 유 (반환사유)				
입 금 계 좌	거래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명	

「울산광역시 남구 문화예술창작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에 따라 사용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주 소 :

성 명(대표자) :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 하

[별지 제5호서식]

수강료 환불 신청서

신청인	주소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폰)	
	성명 (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환불신청사유				
납 부 액				
환불신청액				
입 금 계 좌	거래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명	

「울산광역시 남구 문화예술창작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1조에 따라 수강료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 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남구 문화예술창작촌 시설에 2021년 4월 개관 예정인 장생포문화창고(A-FACTORY)를 포함시킴으로써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및 시설 명칭(안 제2조, 제3조)

나. 문화예술창작촌 시설 운영(안 제4조~제7조)

다. 문화예술창작촌 입주작가 선정 및 지원(안 제8조~ 제12조)

라. 문화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관람료·수강료 등(안 제13조~제22조)

마. 문화예술창작촌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23조~제27조)

바. 문화예술창작촌 운영의 위탁(안 제28조~제30조)

사. 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등 별지서식 신설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4월 2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울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1167호

울산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소상공인 융자지원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에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경영안정 등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소상공인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 또는 관련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경영 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과 그에 따른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 지원
2. 경영안정 및 시설개선 지원
3. 홍보·디자인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4. 전자상거래, 스마트·모바일기기를 이용한 전자결제 시스템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5. 업종전환 또는 폐업 지원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융자 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구와 협약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른다.

제8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1.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융자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등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제6조의2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관련단체 등 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이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남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안 제1조 ~ 제3조)

나.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안 제4조 ~ 제5조)

다. 경영 지원 및 융자 지원(안 제6조 ~ 제7조)

라.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8조)

마. 관련단체 등 지원, 사무의 위탁(안 제9조 ~ 제10조)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남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4월 2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울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1168호

울산광역시 남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

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구에서 주관하는 주요 행사 등에 예우대상자를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병역명문가가 구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수 있다.

제5조(우대)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가 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한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때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협조 요청)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감면대상	감면비율	비 고
「울산광역시 남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50퍼센트	수강료는 1인2강좌 이내 감면 허용

② 「울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울산광역시 남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남구 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지역사회에서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 규정(안 제1조 ~ 제2조)

나.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병역명문가 우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울산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1년 4월 2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울산광역시 남구 규칙 제603호

울산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절의 제목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제9조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법 제83조제4항”을 “법 제83조제6항”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6호서식]<개 정>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년도분

접수일	사업소명	납세의무자			사업소 소재지	기본세율 (가)	연면적에 대한 세율			납부세액 (가+나)	납부일	결재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연면적 (㎡)	세율	세액 (나)			담당자	담당	과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7호서식]<개 정>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

○○○○년도분

과세 번호	사업소명	납 세 의 무 자			사업소 소재지	기본세율 (가)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산출세액 (다=가+나)	가산세 (라)	계 (다+라)	결의일	결 재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연면적 (㎡)	세율	세액 (나)					담당자	담당	과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절 재산분	제1절 사업소분
제8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재산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세(재산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 ---- 사업소분---------- ---------- ---------- ----------(사업소분)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재산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9조(보통징수) ---------- ---------- ---------- -------(사업소분) -------- ---------- 법 제83조제6항 ---------- ----------.

신·구별표대비표

(별지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

현 행

[별지 제6호서식]

주민세(재산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년도 ○○월분 (○○동)

접수일자	사업소명	납세의무자			사업소 소재지	면적	세율	세액	납부일	결재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담당자	담당	과장
			이		하		생	략				

364mm×257mm(일반용지 80g/㎡)

개 정 안

[별지 제6호서식]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년도분

접수일	사업소명	납세의무자			사업소 소재지	기본세율(가)	연면적에 대한 세율			납부세액(가+나)	납부일	결재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연면적(㎡)	세율	세액(나)			담당자	담당	과장
			이		하		생		략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현 행

〔별지 제7호서식〕

주민세(재산분) 과세자료 처리부

○○년도 ○○월분 (○○동)

과세번호	사업소명	납세의무자			사업소 소재지	면적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계	결의일	결재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담당자	담당	과장
			이		하		생		략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개 정 안

[별지 제7호서식]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

○○○○년도분

과세번호	사업소명	납세의무자			사업소 소재지	기본세율(가)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산출세액(다=가+나)	가산세(라)	계(다+라)	결의일	결재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연면적(㎡)	세율	세액(나)					담당자	담당	과장
			이		하		생			략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의 개편 및 납세자가 납부해야 하는 주민세 세세목의 종류가 간소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세 세세목의 명칭 및 별지 서식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함

- ‘재산분’의 명칭을 ‘사업소분’으로 개정(안 제8조 및 제9조)

나. 주민세(사업소분) 관련 서식 개정(별지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

울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1 - 48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4. 2.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 부여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44번길 35-3외 10건

구분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해당주소 지번)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붙임 참조)				

○ 폐지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왕생로 30번길 10외 5건

구분	폐지 도로명주소	폐지 일자	폐지 사유	비고(해당주소지번)
(붙임 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 토지정보과(☎052-226-5642)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4.1.1.부터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부여고시 조서

구분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해당주소 지번)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1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44번길 35-3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동 752-2	2017. 6. 5.	테크노산업로에서 분기되는 도로구간으로 기초번호를 활용하여 부여
2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44번길 35-6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동 751-15	2017. 6. 5.	테크노산업로에서 분기되는 도로구간으로 기초번호를 활용하여 부여
3	울산광역시 남구 왕생로30번길 10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262-6	2009. 12. 11.	왕생로에서 분기되는 도로구간으로 기초번호를 활용하여 부여
4	울산광역시 남구 왕생로30번길 10-1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262-16	2009. 12. 11.	왕생로에서 분기되는 도로구간으로 기초번호를 활용하여 부여
5	울산광역시 남구 왕생로36번길 22-1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260-10	2009. 12. 11.	왕생로에서 분기되는 도로구간으로 기초번호를 활용하여 부여
6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144번길 18-11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33-2	2009. 12. 11.	삼산로에서 분기되는 도로구간으로 기초번호를 활용하여 부여
7	울산광역시 남구 신복로46번길 35-20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1548-3	2011. 4. 22.	신복로에서 분기되는 도로구간으로 기초번호를 활용하여 부여
8	울산광역시 남구 왕생로36번길 22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260-9	2009. 12. 11.	왕생로에서 분기되는 도로구간으로 기초번호를 활용하여 부여
9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241번길 45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331-17	2009. 12. 11.	삼산로에서 분기되는 도로구간으로 기초번호를 활용하여 부여
10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44번길 29-9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동 753-7	2017. 6. 5.	테크노산업로에서 분기되는 도로구간으로 기초번호를 활용하여 부여
11	울산광역시 남구 왕생로36번길 9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264-17	2009. 12. 11.	왕생로에서 분기되는 도로구간으로 기초번호를 활용하여 부여

□ 폐지고시 조서

구분	폐지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사유	비고 (해당주소 지번)
1	울산광역시 남구 왕생로 30번길 10	2021. 3. 30.	건물 신축으로 인한 건물번호 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262-6
2	울산광역시 남구 왕생로36번길 22-1	2021. 3. 30.	건물 신축으로 인한 건물번호 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260-10
3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144번길 18-11	2021. 3. 30.	건물 신축으로 인한 건물번호 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33-2
4	울산광역시 남구 왕생로36번길 22	2021. 3. 30.	건물 신축으로 인한 건물번호 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260-9
5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241번길 45	2021. 4. 1.	건물 신축으로 인한 건물번호 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331-17
6	울산광역시 남구 왕생로36번길 9	2021. 4. 1.	건물 신축으로 인한 건물번호 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264-17

울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1 - 49호

울산광역시 남구 빈집정비계획 결정 고시

관내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정비를 위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근거하여 수립된 빈집정비계획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21년 4월 2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1. 계획의 개요

가. 계 획 명: 울산광역시 남구 빈집정비계획

나. 계획목적: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내 빈집의 효율적 정비와 관리를 위한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

다. 계획의 성격: 빈집 정비에 대한 기본방향 제시

라. 주요내용

1) 빈집실태조사 결과

2) 빈집정비 기본방향

3) 빈집정비계획 수립 전략

4) 울산광역시 남구 빈집정비계획(안전관리 및 철거계획)

5) 빈집정비사업 재원조달계획

6) 그 밖에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마. 계획의 범위

1) 시간적 범위: 기준연도 2021년, 목표연도 2025년

2) 공간적 범위: 울산광역시 남구 (빈집실태조사 결과 빈집: 총 314호)

2. 빈집실태조사 결과

가. 실태조사 결과

1) 빈집 등급별 현황

[단위:호, %]

구분	1등급(양호한집)		2등급(일반빈집)		3등급(불량빈집)		4등급(철거대상)		계	
	빈집 수	비중	빈집 수	비중	빈집 수	비중	빈집 수	비중	빈집 수	비중
울산시 남구	186	59.2	79	25.2	29	9.2	20	6.4	314	100.0

2) 빈집 주택유형별 현황

[단위:호, %]

구분	단독·다가구주택		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그 외 주택		계	
	빈집 수	비중	빈집 수	비중	빈집 수	비중	빈집 수	비중	빈집 수	비중
울산시 남구	120	38.2	70	22.3	96	30.6	28	8.9	314	100.0

3) 빈집정비계획 대상 빈집 현황

[단위 : 호, %]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계
빈집실태조사에 따른 빈집(a)		**186**	**79**	**29**	**20**	**314**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b)[1]		-	1	-	-	1
정비사업(재건축 · 재개발)(c)[2]		62	14	2	1	79
무허가(d)[3]		1	6	6	6	19
기철거(깨밭골지구)(e)		5	1	0	0	6
빈집정비계획 수립 대상 빈집 (a-b-c-d-e)		**118 (56.5)**	**57 (27.3)**	**21 (9.1)**	**13 (6.2)**	**209 (100.0)**
빈집정비계획 수립대상 빈집	예산지원대상	89(51.4)	55(31.8)	17(9.8)	12(6.9)	173(100.0)
	예산미지원대상[4]	29(80.6)	2(5.6)	4(11.1)	1(2.8)	36(100.0)

주1. 빈집 특례법 적용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대상에서 제외함.
주2. 정비계획 중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 해당 사업을 통해 빈집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지므로, 빈집 정비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함.
주3. 정비사업 지역 외 빈집 중,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빈집 정비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함.
주4. 도시재생지역 내의 빈집의 경우 정비계획은 수립하되 사업예산은 도시재생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충당함.

3. 빈집정비계획

가. 빈집 철거계획

1) 3·4등급 빈집을 대상으로 수립하며, 도로의 접면상태·대지면적·인근 주변의 공공시설 및 생활 SOC 시설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

나. 안전조치 계획

1) 1·2등급 빈집의 자발적 정비 유도

2) 3·4등급 중 긴급조치가 필요한 빈집 대상 안전조치(안전펜스 설치 등)

다. 활용 계획

1) 상태가 양호한 1·2등급 빈집을 대상으로 면적, 인근 주변의 공공시설 및 생활 SOC 시설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활용방안을 제시

4. 재원조달계획

가. 빈집정비사업 소요사업비 추정(안)

[단위:천원]

사업내용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비고
리모델링 후 활용	호수	5	1	1	1	1	1	1·2등급 빈집 (5호)
	예산	**75,000**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호당 1,500만원
철거 및 안전조치	호수	16	5	3	2	3	3	3·4등급 빈집 (16호)
	예산	**290,000**	**85,000**	**45,000**	**40,000**	**60,000**	**60,000**	철거: 호당 2,000만원 안전조치: 호당 500만원
철거 후 활용	호수	14	4	2	2	3	3	3·4등급 빈집 (14호)
	예산	**140,000**	**40,000**	**20,000**	**20,000**	**30,000**	**30,000**	조성비: 호당 1,000만원
합 계		**505,000**	**140,000**	**80,000**	**75,000**	**105,000**	**105,000**	

* 추후 소유자 동의, 사업대상 등의 변경에 따라 예산은 변경될 수 있음

5.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청 도시창조과(☏052-226-58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 2021 - 517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생활비용보조사업) 시행 공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및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생활비용보조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4월 2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1. 지원내용

가. 학자금, 전기료 등 생활비용을 **세대별 60~100만원**으로 **소득별 차등지급**

* 기준소득 대비 (90~100%) 60만원, (80~90%) 70만원, (70~80%) 80만원, (60~70%) 90만원, (60% 이하) 100만원
* 재정자립도별 70~90% 국비지원 ⇒ **(남구) 국비 80%, 구비 20%**

2. 지원대상

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거주 가구** 중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4,889,781원) 이하**인 세대

*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73. 6. 27.)부터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 (거주자 사망시 자녀 또는 배우자가 출생 또는 혼인 이후 구역 내에 거주한 경우도 인정)
* 2020년도 사용한 생활비용보조는 전년도(2019년) 통계청 발표자료 기준
* 소득인정액 = 월 소득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세부사항은 붙임 생활비용보조 기준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참조

나. 최근 3년간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3회 이상 개발제한구역법령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이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제외

3. 접수기간

가. 접수기간 : 2021. 4. 2. ~ 2021. 4. 21.(20일)

나. 접 수 처 : 관할 행정복지센터

다.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 제출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1부 ○ 소득・재산신고서 1부 ○ 소득·재산 신고서에 따른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지정당시거주 해당자의 주민등록등초본 1부(주소이력포함) ○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신청인이 생활비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4. 기타 참고사항

○ 모든 제출서류는 반환치 아니하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생활비용보조사업 대상자에서 제외 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당사자 책임으로 합니다. (구비서류는 반드시 접수기간 내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및 남구청 도시창조과(☎ 226-48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보장급여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개정2019.7.1> [1 면]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실거주지 주소[1] :)					휴대전화	
							전자우편	

가족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동거여부 (미동거 사유)	학력 · 재학여부 (학교명/학년반)	건강상태 (장애/질병)	취업상태		전화번호 (집/직장)
							직업	직장명	

1. 배우자 관계[2]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2. 외국여권 소지자명[3]: _____, _____

3. 국외출생자명[4]: _____, _____ 4. 복수국적자명[5]: _____, _____

부양의무자[6]	수급자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가구원수	전화번호
	의					
	의					
	의					
	의					

급여계좌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사유)[7]

통지방법	[ ] 서면 [ ] 전자우편(E-mail) [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 기타 ( )

1)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의 주소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의 주소 기재(주거급여 신청자 중 임차가구에 한함)

2),3) 해당자에 한함

4),5) 아동수당, 양육수당 신청대상에 한함

6) 부양의무자 조사 사업 해당자에 한함(부양의무자 : 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7) 동일보장가구원의 계좌가 아닐 경우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고, 디딤씨앗계좌(CDA) 또는 압류방지통장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보장구분	사회보장급여 내용	
기초생활보장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자가 [ ]임차[8] [ ]기타[9]) [ ]교육급여	
영유아	[ ]양육수당(대상자 이름 :), ([ ]가정양육수당 [ ]장애아동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 이름 :), [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 이름 :)	
아동수당	[ ]지급대상아동이름: ① ② ③)	
아동 · 청소년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①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② 급식(중식)비 ③ 고교학비지원 ④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유해차단서비스) [PC 신청 여부 : [ ]신청 [ ]미신청] [통신사 [ ]KT [ ]SK브로드밴드 [ ]LG U+ [ ]SK 텔레콤 [ ]기타( )] [인터넷 가입(예정)자 성명 : , 주민번호 :] * (필수) 본인 관련 정보를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지정 기관(PC 설치업체, 인터넷통신회사)에 제공 동의[ ]
	[ ]소년·소녀가정 보호비 [ ]청소년특별지원([ ]연장신청)	
노 인	[ ]기초연금([ ]배우자 동시신청)	
장 애 인	[ ]장애인연금([ ]배우자 동시신청 [ ]차상위 부가급여) [ ]장애수당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장애아동수당 [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한부모 가족	[ ]한부모 가족지원(급여지급, 증명서 발급)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급여지급, 증명서 발급)	
기 타	[ ]차상위계층 확인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차상위 자활급여 [ ]시설이용·입소 [ ]희망키움통장(Ⅱ) [ ]타법 의료급여[10] ( ) [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서비스 의뢰 및 연계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자녀생활서비스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확 인 (√ 체크)
1.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2.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기초생활보장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정보, 영유아 및 한부모가족은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 정보, 노인 및 장애인은 본인 및 배우자 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3.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

유 의 사 항	확 인 (√ 체크)
1. 장애인연금의 차상위 부가급여를 신청하여 차상위 자격이 확인되었으나, 위탁 심사결과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지 않는 등록장애인일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일을 장애수당 신청일로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
2.「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3.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4. 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복수국적발생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5.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서비스연계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대행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등)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7. 교육급여를 신청한 경우,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8.「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6 제2항 제3호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요건이 향후 변경되는 경우(부양의무자 또는 그 가구원의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권 소멸·상실 또는 지급 정지, 장애정도 하향조정 등)에는 같은 법에 따른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부양의무자 조사를 위한 서류('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등)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9.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한 경우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급여)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조사 결과 부적합한 경우,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전부 중지된 경우에는 관련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안내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 ]
10.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수급 중 소득이나 재산 등이 변동된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1조의 제2항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하는 것에 동의하며, 이 경우 관련 개인정보(수급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11] 성명 : (서명 또는 인)

(배우자 동시신청 시)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 면]

안 내 사 항

처 리 기 한	- 14일 : 유아학비 - 30일 : 기초생활보장(연장시 60일), 아이돌봄서비스지원(연장시 60일), 기초연금(연장시 60일), 장애인연금(연장시 60일), 청소년특별지원, 아동수당(연장시 60일), 한부모가족(연장시 60일) - 60일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연장시 90일)

관 계 법 률	보장구분	해당 법률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초·중등교육법, 주거급여법
	영유아	영유아보육법, 아이돌봄지원법
	아동 · 청소년	초·중등교육법, 학교 밖 청소년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아동수당법
	노인	기초연금법
	장애인	장애인연금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기타	기초생활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개발제한구역법

신청시 구비서식		추가제출서류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초·중·고 학생 교육비, 장애인,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기타(타법의 의료급여[12]),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차상위계층 확인)	소득·재산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별지 제1호의3서식)	1.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3.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6.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학비지원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 1/4분기 : 수업료납입고지서(신입생인 경우 입학금고지서) - 2/4분기 이후 : 해당학교 재학조회 또는 당해 분기 납입고지서(신규신청) - 학원학습비 및 직원훈련비 등 납입고지서 7. 특별청소년지원 신청의 경우,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보호자 부재·연락 두절, 학업 중단 등) 8.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대상자 중 자립촉진수당 신청자 - 취업훈련확인서, 취업확인서, 검정고시학원등록증빙자료, 재학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서류 중 하나이상 제출 9. 노숙인 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10.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의 경우 취업증빙 서류 11. 농어촌양육수당 신청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12. 희망키움통장(Ⅱ) 신청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희망·내일키움통장 참여(변경) 신청서 13.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거급여 임차수급자에 한함) 14. 복수국적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 1부 , 외국여권 사본1부(외국여권소지자), 국내여권 사본 1부(국내여권소지자) 단, 외국여권 및 국내여권이 모두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15. 복수국적자가 아닌 국외출생자의 경우, 국내여권 사본 1부 단, 국내여권이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노인, 아동 · 청소년, 기타(차상위본인부담 경감, 희망키움통장(Ⅱ))	소득·재산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	
제출하는 곳	관할 시·군·구청(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단, 기초연금 지급 신청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가능	

12)「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 제9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 면]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대행)신청서

자 격 구 분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생계 [ ] 의료 [ ] 주거 [ ] 교육) [ ] 차상위계층 [ ] 장애인 [ ] 한부모가족 [ ] 기초연금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감면 서비스	[ ] TV수신료 면제 [ ] 전기요금할인 (고객번호 :) [ ] 휴대전화요금 (통신사 : [ ] KT [ ] SK 텔레콤 [ ] LG 유플러스) [ ] 도시가스요금 (사용계약자명: 도시가스사업자명: 고객번호:) [ ] 지역난방비 (열사용자번호 :)							

가구원 추가 기재 (휴대전화 요금할인 신청시)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휴대전화 번호	이동통신사
가족사항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유 의 사 항

1. 본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 (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공사, 이동통신사,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사업자, 지역난방공사 등)에서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감면서비스 및 복지자원 연계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고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를 상기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고객번호 등)
2. 요금감면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3. 본 감면 신청과 관련한 결정 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TV 수신료 및 전기요금 : 한국전력공사, 휴대전화요금 : 이동통신사, 도시가스요금 : 도시가스사업자
지역난방비감면 : 지역난방공사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요금 감면 및 복지자원 연계를 (대행)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_____(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의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19.4.1>

소득·재산 신고서 [□신규 □변경]

* 아래 소득, 재산, 부채 사항 중 음영부분은 정보시스템을 통한 조회 결과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가구원 성명[1]					
소득사항	근로소득	상시근로	원	원	원	원
		일용근로	원	원	원	원
	사업소득	농업소득 (주재배작물명)	원 ( )	원 ( )	원 ( )	원 ( )
		임업소득	원	원	원	원
		어업소득	원	원	원	원
		기타(자영업)	원	원	원	원
	재산소득	임대소득	원	원	원	원
		이자소득	원	원	원	원
		연금소득	원	원	원	원
	기타소득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무료임대)	원	원	원	원
		공적이전소득[2]	원	원	기 타 (지자체 지원금등)	원

재산사항					
건축물 (주택, 건물, 시설물)	원	토 지	원		
선 박	원	입목재산	원		
항공기	원	어업권	원		
자동차	□ 차량명( ) □ 용도 (생업용/장애인용/자가용)				
임차보증금	□ 전·월세보증금(원) □ 상가보증금 (원) □ 기타 (원)				
금융재산	원				
동 산	□ 소 (마리, 원) □ 돼지(마리, 원) □ 기타가축(마리, 원) □ 종묘(원) □ 기계·기구류(원) □ 기타(원)	분양권	원		
		조합원 입주권	원		
		회원권	원		
기타 산정되는 재산	소계 (A-(B+C+D))		원		
	(A) 일정기간[3] 이내에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가액		원		
	(B) 다른 재산의 구입금액		원		
	(C) 부채 상환액		원		
	(D) 의료비 등 개별가구원이 소비한 금액		원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원	금융기관외 기관 대출금	원		
임대보증금	원				
개인간 부채	□ 판결문·화해·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원)				

가구특성 지출비용[4]	
	□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한 월평균 의료비 (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받은 재활보조금·피부양보조금 (원)
	□ 국민연금보험료 본인부담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원)
	□ 대학생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중 월평균 등록금 지출 비용 (원)

위와 같이 소득·재산 내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귀하

1)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에서 작성한 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성명
2) 공적이전소득 : 법령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3)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은 2011년 7월 1일 이후 / 기초생활보장은 조사일로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날
4) 가구특성지출비용 : 소득평가액 산정 시 제외되는 가구특성 지출비용이 되는 금품으로 기초생활보장만 해당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19.4.1> [앞면]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지원대상자 가구 세대주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

※ 유의사항 : 인감으로 동의할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동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등 보호자의 자필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포함)으로 대신합니다.

세대주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1),2)]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에 동의함[3)]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		
		–		
		–		
		–		

1) 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이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교육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특별시교육감·광역시교육감·특별자치시교육감·도교육감·특별자치도교육감(관련법에 따른 위탁업무수행 기관장 포함, 이하 '보건복지부장관 등'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이 계좌 명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등을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데에 동의합니다.(만일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단, 기초연금의 경우는 별첨서식「금융정보 등 제공 사실 통보요구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만 통보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동의서 제출 후 신청 서비스 자격 결정 전(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는 이력관리 신청서의 유효기간)까지, 자격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상실 전 까지

5. 정보제공 목적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복지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아이돌봄지원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초·중등교육법」, 「의료급여법」, 「주거급여법」에 따른 복지대상자 선정·확인조사 지원 및 별지 제1호 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

년 월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금융기관 등의 명칭

1.「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
 1)「은행법」에 따른 은행
 2)「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7)「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8)「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9)「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10)「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1)「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12)「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3)「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1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 예금 : 3개월 이내 평균 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5)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6) 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또는 할인액

2. 신용정보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1) 보험증권 :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 사항

○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2조제8항,「기초연금법」제11조제4항,「장애인연금법」제9조제8항, 「의료급여법」제3조의3제3항,「주거급여법」제14조,「아이돌봄지원법」제24조제3항,「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의4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이 동의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1조,「기초연금법」제10조, 「장애인연금법」제8조 및「한부모가족지원법」제11조,「장애인복지법」제50조의2,「초·중등교육법」제60조의5,「의료급여법」제3조의3제2항,「주거급여법」제9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향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9조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3조 및「기초연금법」제11조제2항,「장애인연금법」제11조, 「의료급여법」제3조의3제3항, 「주거급여법」제11조에 따른 확인조사의 경우에는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동의자(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2조제6항 및 제23조의2제6항,「기초연금법」제12조제6항,「긴급복지지원법」제13조제7항 및 「장애인연금법」 제9조 제6항 및 제12조제6항,「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3,「장애인복지법」제50조의3제6항,「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15조제6항, 「의료급여법」제3조의3제3항,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6, 「주거급여법」제15조제6항에 따라 **대상자 선정 및 급여 지급계좌 유효성** 확인을 위한 금융재산 등의 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4조 또는 해당 법률의 벌칙규정을 적용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울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1-534호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4월 2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1. 개정이유

가. 「정신보건법」등 법령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위임사무를 정비해 행정의 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2021.6.1.시행)으로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임대차 신고제'가 신설됨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등 권한의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

2. 주요내용

가.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개정됨에 따른 근거법령 변경 및 신설 사무 추가(안 별표 1)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일부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 및 근거법령 현행화(안 별표2)

3. 근거법규

가.「지방자치법」 제104조

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2, 제6조의3

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정신건강복지법)

라.「지방세징수법」 제5조

마.「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6조

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5조, 제7조

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1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참조: 기획예산과, 전화 226-5321, 팩스 226-525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6. 참고사항

개정 조례안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ulsannamgu.go.kr)에 첨부물로 올려놓겠습니다. 기획예산과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과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위임자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자
구청장 (위생과)	1. ~ 13.(생 략)	(생 략)	보건소장
	1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나.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	같은 법 제11조	
	다.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등	같은 법 제12조	
	라. 정신건강복지계획 수립의 의견 수렴, 자료제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마.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같은 법 제15조	
	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같은 법 제15조의3	
	사. 정신의료기관의 허가취소, 폐쇄, 사업정지	같은 법 제19조	
	아. 과징금 처분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자. 정신요양시설의 설치 및 처분 등	같은 법 제22,24,25조	
	차. 정신재활시설의 설치 및 처분 등	같은 법 제26,28,29조	
	카. 청문	같은 법 제32조	
	타.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	같은 법 제44조	
	파. 신상정보의 확인	같은 법 제51조	
	하.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같은 법 제53조	
	거.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같은 법 제54조	
	너.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의 회부	같은 법 제56조	
	더. 퇴원등 명령의 통지 등	같은 법 제59조	
	러.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해제	같은 법 제62조	
	머. 외래치료 지원 등	같은 법 제64조	
	버. 보고·검사	같은 법 제66조	
	서.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구청장 (위생과)	15. ~ 17.(생 략)	(생 략)	보건소장
	18.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다		보건소장

	음의 권한 가. 치매관리 시행계획 수립 나.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다.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라. 치매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마.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바.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사.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아.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자.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차.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치매관리법」 제6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2조의3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별표 2] <개정>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위임자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자
구청장 (경제정책과)	1. 농지원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농지원부의 작성·비치 나.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 다. 자경증명의 발급	 「농지법」 제49조 「농지법」 제50조제1항 「농지법」 제50조제2항	동장
구청장 (문화체육과)	1. 문화의 집 운영관리	「지방자치법」 제144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5조	동장
구청장 (세무1과)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동에 신청한 경우에 한함) 2.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동에 신청한 경우에 한함) 3.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동에 신청한 경우에 한함)	「지방세징수법」 제5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6조 「지방세징수법」 제5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6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17조	동장
구청장 (민원여권과)	1.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 (동에 신청한 경우에 한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동장
구청장 (노인장애인과)	1. 장애인 등록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장애등급 조정 나.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 2. 매장·화장 및 개장의 신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동장
구청장 (환경관리과)	포장폐기물·1회용품등의 사용 억제 및 다량발생업소 지도 단속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동장
구청장 (토지정보과)	1. 토지(임야)대장 열람 및 등본발급 (동에 신청한 경우에 한함)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동에 신청한 경우에 한함) 3.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 (동에 신청한 경우에 한함) 4. 지적(임야)도 등본 발급 (동에 신청한 경우에 한함) 5.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5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같은 법 제6조의3	동장

신·구별표대비표

현 행

[별표 1]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위임자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 거 법 령
구청장 (위생과)	1. ~ 13. (생 략)	(생 략)
	14. 정신보건법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정신보건사업 계획의 수립 나. 정신보건사업 계획수립의 의견 수렴, 자료제출 다. 정신의료기관의 허가취소, 폐쇄, 사업정지 라. 과징금 처분 바. 사회복귀시설의 설치 및 변경신고 사. 사회복귀시설의 폐쇄 및 사업정지명령 아. 행정처분대장의 기록 · 보관 자. 청문 차. 퇴원자 등에 대한 조치 카.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위원 위촉 타.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간사 임명 파. 퇴원명령 및 심판위원회 심사결과 통지 하. 보고 검사 등 거. 정신의료기관등에 대한 지도·감독보고 너.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심사결과 통보 더. 과태료 부과·징수 러. 과태료 경감 · 가중 머. 사회복귀시설 폐지,휴지,재개신고 버. 외래치료 명령 서. 정신보건센터의 위촉	「정신보건법」제4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2조의3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같은 법 제27조,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3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15. ~ 17.(생 략)	(생 략)
	〈신 설〉	〈신 설〉

개 정 안

[별표 2]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위임자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 거 법 령
구청장 (위생과)	1. ~ 13. (생 략)	(생 략)
	1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나.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 다.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등 라. 정신건강복지계획 수립의 의견 수렴, 자료제출 마.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사. 정신의료기관의 허가취소, 폐쇄, 사업정지 아. 과징금 처분 자. 정신요양시설의 설치 및 처분 등 차. 정신재활시설의 설치 및 처분 등 카. 청문 타. 사군구청장에 의한 입원 파. 신상정보의 확인 하.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거.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너. 정신건강심의위원회위원의 회부 더. 퇴원등 명령의 통지 등 러. 사군구청장에 의한 입원취소 머. 외래치료 지원 등 버. 보고·검사 서. 과태료 부과·징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동법 제11조 동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동법 제15조 동법 제15조의3 동법 제19조 동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동법 제22,24,25조 동법 제26,28,29조 동법 제32조 동법 제44조 동법 제51조 동법 제53조 동법 제54조 동법 제56조 동법 제59조 동법 제62조 동법 제64조 동법 제66조 동법 제6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15. ~ 17.(생 략)	(생 략)
	18.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치매관리 시행계획 수립 나.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다.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라. 치매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마.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바.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사.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아.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자. 치매환자의 기초지원사업 차.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치매관리법」제6조 동법 제12조 동법 제12조의3 동법 제17조 동법 제17조 동법 제17조 동법 제17조 동법 제17조 동법 제17조 동법 제17조의4

현 행

[별표 2]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위임자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 거 법 령	수임자	비
구청장 (행복기획단)	(생략)	(생략)	동장	
구청장 (문화체육과)	(생략)	(생략)	동장	
구청장 (세무과)	(생략)	「지방세기본법」 제63조제2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 제20조 「지방세기본법」제63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0조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제16조	동장	
구청장 (민원여권과)	(생략)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14조	동장	
구청장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생략)	(생략)	동장	
구청장 (환경관리과)	(생략)	(생략)	동장	
구청장 (토지정보과)	1.~4.(생략) <신 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신 설>	동장	

개 정 안

[별표 2]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위임자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 거 법 령	수임자
구청장 (경제정책과)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동장
구청장 (문화체육과)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동장
구청장 (세무과)	(현행과 같음)	「지방세징수법」 제5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6조 「지방세징수법」 제5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6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17조	동장
구청장 (민원여권과)	(현행과 같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동장
구청장 (노인장애인복지과)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동장
구청장 (환경관리과)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동장
구청장 (토지정보과)	1.~4.(생략) 5.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신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5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같은법 제6조의3	동장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임차가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

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제6조의2에 따라 신고한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정신건강복지법)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각각 국가계획과 지역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관할 시·도의 지역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계획의 시행계획 내용을 포함하여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 및 제8조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시행 결과를, 시·도지사는 해당 지역계획의 시행 결과를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협조에 관하여는 제7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은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시행계획"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징수법」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①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이전하는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되었거나 납세의무가 성립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증명서로 한정한다. <개정 2020. 1. 29.>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를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3.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4.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할 때

②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으면 세무공무원은 그 사실을 확인하여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약칭: 민원처리법)

제9조(민원의 접수)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해당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과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민원 및 처리기간이 '즉시'인 민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민원의 접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민원처리기준표의 고시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민원의 처리기관,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한 민원처리기준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전자정부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이하 "통합전자민원창구"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제1항에 따라 고시된 민원처리기준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즉시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통합전자민원창구에 게시한 후 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의 간소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처리기간, 구비서

류, 처리절차, 신청방법 등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보고서) ① 영 제8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재지, 면적 및 공부상 지목
2. 지리적 위치
3. 토지 이용 상황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용도지역(이하 "용도지역"이라 한다)
5. 주위 환경
6. 도로 및 교통 환경
7. 토지 형상 및 지세(地勢)

②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은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조사·평가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24.>

1. 지역분석조서
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표준지별로 작성한 표준지 조사사항 및 가격평가의견서
3.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의견청취결과서[영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은 결과를 기재한다]
4. 표준지의 위치를 표시한 도면
5. 그 밖에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

제5조(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발급) ① 법 제10조에 따라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을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4.>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확인 신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 또는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7조(개별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개별토지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①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적소관청에 그 열람 또는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지적공부(지적도 및 임야도는 제외한다)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울산광역시남구 공고 제2021-547 호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주요 간선도로변 교통혼잡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CCTV) 설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취지와 설치 장소를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그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일

울산광역시남구청장

1. 설치사유

○ 주요 간선도로변의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혼잡 및 주민불편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2. 설치목적

○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 및 예방

3. 설치장소(2개소)

○ 정동로 135(백합초등학교 앞 교차로)

○ 중앙로 213(시청정문 앞 교차로)

4. 예고기간 및 공고방법

가. 예고기간 : 2021. 4. 2. ~ 2021. 4. 22.(20일간)

나. 공고방법 : 공보 및 홈페이지(http://www.ulsannamgu.go.kr)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0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CCTV 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처 : 남구청 안전총괄과

라. 문의 및 의견 제출 안내

○ 우 편 : (우)44701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33 안전총괄과

○ 팩 스 : 052)226-5268

○ 문의사항 : 052)226-5571

마.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의 견 제 출 서

사 업 명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설치예정위치	의 견 제 출 내 용(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등)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신규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1-548호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4월 2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일괄이양법」 및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여 본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일괄이양법」 시행('21. 1. 1.)으로 시에서 이양된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또는 배급업 신고에 대한 수수료 신설(안 별표 2)

나.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20. 6. 4.)으로 애니메이션업 신고·변경신고·신고증 재발급 신청에 대한 수수료 신설(안 별표 2)

3. 근거법규: 따로 붙임

가. 「지방자치법」 제154조, 제156조

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1조

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다.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라.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1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참조: 세무2과장, 전화 226-3590, 팩스 226-5257)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6. 참고사항

개정 조례안은 우리구 홈페이지(http://www.ulsannamgu.go.kr)에 첨부물로 올려놓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남구청 세무2과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개정>

증명 등의 수수료(제3조제1항 관련)

1. 각종 증명 발급

구 분	기 준	수수료(원)	비 고
가. 의료기관 및 약국의 휴·폐업 사실증명	1통	500	
나. 공장등록 증명서 및 공장등록대장 등본	1통	1,000	
다. 공장설립 입지기준 확인	1건	2,000	
라. 채무불이행자명부의 열람·복사	1건	500	
마.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1건	600	
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통	800	전자민원(인터넷) 발급시 무료
사. 부동산 공시가격 확인서			
(1) 개별공시지가	1필지	800	
(2)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1주택	800	
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필지	1,000	칼라발급시 1,500원
자. 기타 공부에 의한 증명 또는 사실확인	1건	500	

2. 인가·허가·신청·신고·등록 등

구 분	기 준	수수료(원)	비 고
가. 일반 행정 관계			
(1) 공유재산의 대부(신규) 신청	1건	5,000	
(2) 공유재산의 대부(갱신 또는 기간연장) 신청	1건	3,000	
(3) 도로점용허가	1건	1,000	
(4)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1건	1,000	
나.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등 재교부 신청	1건	1,000	
다. 농수산관계			
(1) 비료생산업 등록	1건	30,000	
(2) 비료수입업 신고	1건	20,000	
(3) 낚시어선업 신고	1건	2,500	
(4) 내수면어업(양식어업·정치망어업) 면허신청	1건	9,000	
(5) 내수면어업(공동어업) 면허신청	1건	7,500	
(6) 내수면어업허가(자망어업·종묘채포어업·연승어업·패류채취어업·낭장망어업·각망어업) 신청	1건	5,000	
(7) 내수면어업 신고	1건	1,000	
(8)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	1건	5,000	
(9) 어업면허증·관리선사용지정증(어선사용승인증) 재발급	1건	1,000	

구 분	기 준	수수료(원)	비 고
(10) 어업권 포기 신고	1건	1,000	
(11) 연안어업 허가	1건	2,500	
(12)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	1건	4,000	
(13) 어업허가 유예	1건	1,500	
(14) 한시어업 허가 및 허가연장	1건	2,000	
(15)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1건	1,500	
(16) 어업신고사항 변경	1건	1,000	
(17) 허가·신고 어업 폐업 신고	1건	800	
(18) 허가어업 휴업 및 재개 신고	1건	1,000	
(19) 허가어업 휴업 연장 신고	1건	800	
(20) 어업권 등의 보상청구 수수료	1건	2,000	
(21) 입어·어장구역 등 재결신청	1건	3,000	
(22)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신청	1건	4,500	
(23) 유해어법 사용허가 신청	1건	3,000	
(24) 수산자원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신청	1건	3,000	
(25)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 신청	1건	2,000	
(26)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 신청	1건	1,000	
(27) 어선건조·개조허가서, 허가사항변경허가서,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영역서 재발급	1건	1,000	
(28) 어선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1건	3,000	
(29)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1건	800	
(30)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	1건	3,000	
(31) 유선의 안전검사 신청	1척	6,000	
라. 문화체육 관계			
(1) 게임 제작업·배급업 및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1건	20,000	
(2)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1건	20,000	
(3)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1건	20,000	
(4)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및 신고	1건	20,000	
(5) 게임제작업·게임제공업 등의 허가·등록·신고 사항 변경	1건	5,000	
(6) 공연장 등록	1건	10,000	
(7) 공연장 변경등록	1건	5,000	
(8)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1건	60,000	
(9)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1건	50,000	
(10)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변경신고)	1건	30,000	

구 분	기 준	수수료(원)	비 고
(11)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변경신고)	1건	15,000	
(12) 기타유원시설업 신고	1건	30,000	
(13)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	1건	15,000	
(14)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1건	10,000	
(15) 영화업,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및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신고(등록)	1건	20,000	
(16) 영화업,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배급업 변경신고	1건	10,000	
(17)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1건	5,000	
(18)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	1건	20,000	
(19)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	1건	10,000	
(20)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	
(21)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및 노래연습장업 등록	1건	20,000	
(22)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배급업 변경신고	1건	10,000	
(23)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1건	10,000	
(24)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1건	5,000	
(25)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등록증 재교부	1건	4,000	
(26) 체육시설업의 신고	1건	30,000	
(27)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1건	10,000	
(28)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배급업 신고	1건	20,000	<신설>
(29) 애니메이션업 신고	1건	20,000	<신설>
(30) 애니메이션업 변경 신고	1건	10,000	<신설>
(31) 애니메이션업 신고증 재교부	1건	5,000	<신설>
마. 보건관계			
(1)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 개설등록	1건	10,000	
(2)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1건	10,000	
(3) 의료기관 개설 및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	1건	40,000	
(4) 의료기관 및 부속 의료기관 개설 허가	1건	100,000	
(5) 의료기관 개설 변경 신고	1건	20,000	
(6) 의료기관 개설 변경 허가	1건	40,000	
바. 위생용품 제조업 등			
(1) 영업신고	1건	28,000	
(2) 소재지 변경신고	1건	20,000	
(3) 기타 변경신고 및 영업자 지위승계	1건	9,000	
사. 부동산중개업 관계	1건	20,000	
(1)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인)	1건	20,000	

구 분	기 준	수수료(원)	비 고
(2)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법인)	1건	30,000	
(3) 중개사무소등록증 및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재교부	1건	800	
(4) 분사무소 설치신고	1건	10,000	
(5)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1건	800	
아. 환경관계			
(1)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1건	10,000	
(2)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및 변경 신고	1건	5,000	
자. 교통관계			
(1) 차고지 설치확인 신청	1건	6,000	
(2) 자가용화물자동차 신규·변동신고	1건	1,500	
(3)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신청	1건	1,500	
(4) 자가용화물자동차 임대허가신청	1건	1,500	
(5) 임대자가용화물자동차 반환신고	1건	1,500	
차. 석유판매업 관계			
(1) 주유소·부생연료유 판매소 등록신청	1건	20,000	
(2) 용제판매소 등록 및 석유·석유대체연료 판매업 신고	1건	10,000	

신・구조문대비표
[별표]

현 행

[별표]

증명 등의 수수료(제3조제1항 관련)

1. 각종 증명 발급

구 분	기 준	수수료(원)	비
가. ~ 자. (생략)	(생략)	(생략)	

2. 인가·허가·신청·신고·등록 등

구 분	기 준	수수료(원)	비
가. ~ 다. (생략)	(생략)	(생략)	
라. 문화체육 관계			
(1) 게임 제작업·배급업 및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1건	20,000	
(2)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1건	20,000	
(3)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1건	20,000	
(4)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및 신고	1건	20,000	
(5) 게임제작업·게임제공업 등의 허가·등록·신고 사항 변경	1건	5,000	
(6) 공연장 등록	1건	10,000	
(7) 공연장 변경등록	1건	5,000	
(8)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1건	60,000	
(9)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1건	50,000	
(10)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변경신고)	1건	30,000	
(11)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변경신고)	1건	15,000	
(12) 기타유원시설업 신고	1건	30,000	
(13)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	1건	15,000	
(14)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1건	10,000	
(15) 영화업,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및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신고(등록)	1건	20,000	
(16) 영화업,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배급업 변경신고	1건	10,000	
(17)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1건	5,000	
(18)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	1건	20,000	
(19)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	1건	10,000	
(20)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	
(21)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및 노래연습장업 등록	1건	20,000	
(22)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배급업 변경신고	1건	10,000	
(23)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1건	10,000	
(24)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1건	5,000	
(25)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등록증 재교부	1건	4,000	
(26) 체육시설업의 신고	1건	30,000	
(27)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1건	10,000	

개 정 안

[별표]

증명 등의 수수료(제3조제1항 관련)

1. 각종 증명 발급

구 분	기 준	수수료(원)	비
가. ~ 자. (생략)	(생략)	(생략)	

2. 인가·허가·신청·신고·등록 등

구 분	기 준	수수료(원)	비
가. ~ 다. (생략)	(생략)	(생략)	
라. 문화체육 관계			
(1) 게임 제작업·배급업 및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1건	20,000	
(2)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1건	20,000	
(3)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1건	20,000	
(4)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및 신고	1건	20,000	
(5) 게임제작업·게임제공업 등의 허가·등록·신고 사항 변경	1건	5,000	
(6) 공연장 등록	1건	10,000	
(7) 공연장 변경등록	1건	5,000	
(8)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1건	60,000	
(9)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1건	50,000	
(10)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변경신고)	1건	30,000	
(11)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변경신고)	1건	15,000	
(12) 기타유원시설업 신고	1건	30,000	
(13)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	1건	15,000	
(14)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1건	10,000	
(15) 영화업,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및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신고(등록)	1건	20,000	
(16) 영화업,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배급업 변경신고	1건	10,000	
(17)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1건	5,000	
(18)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	1건	20,000	
(19)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	1건	10,000	
(20)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	
(21)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및 노래연습장업 등록	1건	20,000	
(22)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배급업 변경신고	1건	10,000	
(23)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1건	10,000	
(24)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1건	5,000	
(25)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등록증 재교부	1건	4,000	
(26) 체육시설업의 신고	1건	30,000	
(27)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1건	10,000	

현 행	개 정 안

구 분	기 준	수수료(원)	비
<신설>			
마. ~ 차. (생략)	(생략)	(생략)	

구 분	기 준	수수료(원)	비
(28)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배급업 신고	1건	20,000	
(29) 애니메이션업 신고	1건	20,000	
(30) 애니메이션업 변경 신고	1건	10,000	
(31) 애니메이션업 신고증 재교부	1건	5,000	
마. ~ 차. (생략)	(생략)	(생략)	

근 거 법 규

□ 「지방자치법」

제154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

①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 3. 18., 2018. 2. 21., 2020. 2. 1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이 자체교육 또는 연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3.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방송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그 사업의 홍보에 사용

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5. 관혼상제 또는 종교의식 등의 행사를 기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다만, 공중에게 유통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21., 2020. 2. 18.>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24., 2020. 2. 18.>

④ 시장·군수·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24., 2020. 2. 18.>

⑤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제작업자와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배급업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12. 24.>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절차·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8. 12. 24.>

제31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또는 등록을 하는 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의 신고
2.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
3.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4.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배**

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서 제출)

① 법 제1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제작업 또는 배급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 11. 29., 2019. 6. 4., 2020. 12. 31.>

1.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한다)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2. 소유 또는 임차한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19., 2011. 11. 29., 2012. 4. 5.>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 공장을 포함한다)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3. 사업자등록증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6. 4. 법률 제16690호, 2019. 12. 3. 제정>

제17조(애니메이션업자의 신고 등)

① 애니메이션업자가 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이 자체교육 또는 연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3.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방송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4. 공공기관이 그 사업의 홍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5. 관혼상제 또는 종교의식 등의 행사를 기념으로 남기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다만, 공중에게 유통하거나 시청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정보통신망만을 이용하여 시청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배급하는 경우
7.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유통하거나 시청에 제공할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6. 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95호, 2020. 6. 4. 제정>

제3조(애니메이션업자의 신고)

①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애니메이션업자가 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애니메이션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한 애니메이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애니메이션업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4항에 따른 신고증 및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2. 상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
3. 영업소의 소재지
4. 애니메이션업의 종류

④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애니메이션업 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고증을 받은 자가 신고증을 잃어버리거나 신고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애니메이션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에 신고증을 첨부(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현행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와 개별 법령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징수하는 각종 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종류와 금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종류 및 금액) ① 증명의 발급, 인가·허가, 신청·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②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별표와 같이 한다. 이 경우 우편요금은 청구자가 부담한다.

제4조(기준) 증명 등을 동일한 것으로 2통 이상 신청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5조(징수 방법) 수수료는 「울산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6조(납부 수수료의 반환) 증명 등이 발급기관의 책임으로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등. 이 경우 면제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상업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울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라.「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마.「울산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에 속하는 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1-550호

울산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4월 2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1. 개정이유

민원인 권익 보호를 위해 수수료를 수입증지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및「전자정부법」등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각종 증명 등 수수료를 원칙적으로 수입증지로 납부하도록 한 의무· 원칙 규정 개정(안 제3조)

3. 근거법규

가. 「지방자치법」 제154조, 제156조

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다. 「전자정부법」 제14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1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참조: 세무2과장, 전화 226-3590, 팩스 226-5257)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6. 참고사항

개정 조례안은 우리구 홈페이지(http://www.ulsannamgu.go.kr)에 첨부물로 올려놓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남구청 세무2과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울산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울산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를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수수료 납부) ① 구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입증지는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현금, 신용카드, 그 밖의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수수료 납부) ① -------- ---------- ---------- --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삭 제>

근 거 법 규

□「지방자치법」

제154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현금·수입인지·수입증지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 처리에 따른 수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전자정부법」

제14조(세금 등의 전자적 납부)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벌금, 과료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1 - 55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사전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위반자에게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되어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 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1. 처분의 제목:「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2. 법적근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3. 처분대상

임대사업자 성 명	주 소	임대주택 소재지	위 반 내 용	과 태 료 부 과 금 액
공홍*	울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18*, 10*동 50*호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266 (삼산동, 태화강 더뷰) 1710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위반 (임대의무기간 내 양도)	5,000,000원

4. 공고기간 : 2021. 4. 2. ~ 2021. 4. 26. (25일간)
5. 게시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안내사항

1) 위 내용과 같은 위반사항에 대하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이를 공시송달 하오며,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의 20범위 이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으며,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청 건축허가과(☎052-226-59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울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1 - 554호

「울산광역시 남구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4월 2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울산광역시 남구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환경공무직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환경미화원 감독의 연임 제한 규정 신설로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명칭변경: 환경미화원 → 환경공무직

나. 환경미화원 감독의 연임 제한 규정 신설(안 제18조 4항)

3. 근거법규

가. 「2020년 환경공무직 단체협약서」

4. 개정규칙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1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참조: 환경관리과장, 전화 226-5773,팩스 226-5263)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6. 참고사항

개정 규칙안은 우리구 홈페이지(http://www.ulsannamgu.go.kr)에 첨부물로 올려놓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남구청 환경관리과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붙임]

의 견 서

규 칙 명	울산광역시 남구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관련 조문	검 토 의 견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4월 일

제출자 (서명)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남구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남구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 남구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을 “울산광역시 남구 환경공무직 복무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환경미화원”을 각각 “환경공무직”으로 한다.

제3조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직”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미화원”을 각각 “환경공무직”으로 한다.

제6조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직”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전단 중 “환경미화원”을 각각 “환경공무직”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직”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직”으로 한다.

제10조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직”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환경미화원”을 각각 “환경공무직”으로 한다.

제12조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직”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환경미화원”을 각각 “환경공무직”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중 “환경미화원”을 각각 “환경공무직”으로 한다.

제16조 중 “환경미화원에”를 “환경공무직에”로, “환경미화원은”을 “환경공무

직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환경미화원”을 각각 “환경공무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하며 연임할 수 있다.”를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환경미화원 징계 및 고용해지)”를 “(환경공무직 징계 및 고용해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환경미화원”을 각각 “환경공무직”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호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직”으로 한다.

②「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본청 전결사항 라. 환경관리과의 단위업무 중 “20. 환경미화원 관리” 를 “환경공무직 관리” 로 한다.

[별표 1] <개정>

환경공무직 근무시간(제7조 관련)

기 간	시작시간	식사 및 휴게시간 (조식)	식사 및 휴게시간 (중식)	마치는 시간
연 중	06:00	08:00 ~09:00	12:00 ~13:30	16:30

[별표 2] <개정>

환경공무직 징계처분 기준(제19조 관련)

구분	위 반 사 항	처 분 기 준						
		경고	정 직					해고
			1일	2일	3일	4일	5일	
발생시	형사입건 또는 기소되어 금고이상의 형 확정 자							1회
	무고한 투서 등 총화를 해하는 자							1회
	조장 등 제도를 임의로 만든 자							1회
	도급행위						1회	2회
	부정한 목적으로 금품수수 또는 거출행위						1회	2회
	금품요구 및 부당이득 수취				1회			2회
월단위	무단지참	1회	2회	3회	4회			5회
	지시사항 불이행	1회	2회	3회	4회			5회
	담당구역 청소 불량	1회	2회	3회	4회			5회
	폐기물을 하수구, 빗물받이에 무단투기행위		1회	2회	3회			4회
	품위손상	1회	2회	3회	4회			5회
	장비관리 불철저	1회	2회	3회	4회			5회
	수거기피 및 정일수거 불이행	1회	2회	3회	4회			5회
	무단결근		1회	2회	3회			4회
	복장위반	1회	2회	3회	4회			5회
	안전장구 미착용, 안전의무 불이행	1회	2회	3회	4회			5회
	근무중 음주행위			1회	2회			3회
연단위	근무태만	1회	2회	3회	4회			5회
	근무지 무단이탈		1회	2회	3회			4회
	지역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행위	1회	2회	3회	4회			5회
	근무 중 주민 등에게 행패		1회	2회	3회			4회
	수거한 폐기물을 무단소각 또는 투기하는 행위		1회	2회	3회			4회
	도박 또는 사행위를 조장한자			1회	2회			3회
처분 등의 기준	1. 종합처분 : 개개의 처분결과(월단위, 년단위)를 합산처분 가. 경고처분 연 8회이상 : 해고 나. 정직일수에 관계없이 정직처분 연 6회이상 : 해고 다. 정직횟수에 관계없이 정직처분 연 10일이상 : 해고 2. 동시에 수개의 위반행위가 경합시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되, 경고처분 2이상 경합시에는 정직1일, 정직처분 경합시에는 정직일수를 합산하여 처분한다. 3. 징계처분기준에 명시되지 않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는 동 처분기준 중 유사한 기준을 적용한다. 4. “연”의 기준은 통상 사용력(회계년도)을 기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개정>

환 경 공 무 직 신 상 카 드

주 소 :

종사부서 : 번호 : 성명:

성별 : 생 년 월 일 : 년 월 일

고용년월일 : 년 월 일

해고년월일 : 년 월 일

징 벌 사 유	징 벌 내 용								비고
	1회		2회		3회		4회		
	일자	구분	일자	구분	일자	구분	일자	구분	
본 규칙에 의한 지시 명령 위반									
직무태만									
지참 및 무단조치									
출근부 대리날인자 및 동요구자									
출근부 허위 날인자									

거주지 약도

[별지 제4호서식] <개정>

정 년 연 장 신 청 서

소 속		직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근무시간	(년 월)		
연장신청 기 간			
비 고 (연장사유)			

울산광역시남구환경공무직복무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연장을 신청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울산광역시 남구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	울산광역시 남구 환경공무직 복무 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남구 환경미화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환경공무직----------.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정의) ----------.
1. “청소감독원”이란 환경미화원 중 청소 책임구역내의 소속 근로자를 지도·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환경공무직 ----------.
2. “청소차 운전원”이란 환경미화원 중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청소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환경공무직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조 (적용범위) 환경미화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법령 및 조례로서 별도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환경공무직----------.
제4조 (채용 자격기준) ① 환경미	제4조 (채용 자격기준) ① 환경공

화원의 채용을 위한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무직----------.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환경미화원을 신규 채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 환경공무직----------.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6조 (정년퇴직) 환경미화원의 정년은 60세로 하며, 퇴직시기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12월말로 한다.	제6조 (정년퇴직) 환경공무직----------.
제7조 (근무시간) ①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은 별표 1에 의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히 청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근무시간) ① 환경공무직----------. ----------.
②환경미화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근시간에 출근하여 사역부에 날인한 후 구청장 또는 청소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시행한다. ,	②환경공무직----------.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 (결근신고) ① 환경미화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구청장 또는 감독에게 전일 근무시간 내에 결근 신고를 하여야 하	제8조 (결근신고) ① 환경공무직----------

며, 부득이할 경우 결근 당일 작업시작 전까지 전화 또는 구술의 방법으로 결근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 (공가) 환경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할 수 있다.	제9조 (공가) 환경공무직----------.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0조 (휴가) 환경미화원은 7일의 기간내에서 휴가를 허가받을 수 있으며, 특별휴가·퇴직휴가 실시는 단체협약에 의한다.	제10조 (휴가) 환경공무직----------.
제11조 (신상카드 및 비상연락망 비치) ①환경미화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상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신상카드 및 비상연락망 비치) ①환경공무직----------.
②환경미화원에 대하여는 비상연락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환경공무직----------.
제12조 (복장) 환경미화원은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12조 (복장) 환경공무직----------.
제13조 (임무 및 작업방법) ①환경미화원의 임무 및 작업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13조 (임무 및 작업방법) ①환경공무직----------.

1. 청소감독원	1. --------
가. 구청장의 작업지시에 따라 청소를 시행하고 관할 구역 안 환경미화원을 지휘·감독한다.	가. ---------- ---------- ----- 환경공무직------ ----------.
나. 제16조에 의거 배치를 받은 환경미화원을 관할구역 담당업무와 청소구간을 지정·배치하고 청소업무를 총괄·지휘한다.	나. ---------- - 환경공무직---------- ---------- ---------- ----------.
다. 환경미화원의 출퇴근 및 복무사항 등을 지도·점검한다.	다. 환경공무직---------- ---------- ---.
라.·마. (생 략)	라.·마. (현행과 같음)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 (교육) ①환경미화원은 주 1회 이상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교육) ①환경공무직---- ----------.
②제1항의 교육내용은 환경미화원으로서 준수사항과 작업방법 등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②---------- 환경공무직 ---------- ----------.
제16조 (근무지 조정 및 배치) 구청장은 청소 업무의 효율성과 작업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근무지를 조정·배치할 수	제16조 (근무지 조정 및 배치) -- ---------- ---------- 환경공무직에 ---------- ----------

있으며 근무지가 변경된 환경미화원은 변경된 근무지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	------ 환경공무직은 --------------------------.
제18조(감독의 임명 및 해임) ① (생 략)	제18조(감독의 임명 및 해임) ① (현행과 같음)
② 감독의 임명기준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이다.	② ----------.
1. 환경미화원으로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	1. 환경공무직----------
2. 환경미화원으로서 덕망이 있는 사람	2. 환경공무직----------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감독은 청소 전방지휘소별로 각 1명을 두며,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 (환경미화원 징계 및 고용해지) ① 환경미화원의 징계처분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제19조 (환경공무직 징계 및 고용해지) ① 환경공무직----------.
② 구청장은 환경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고용을 해지할 수 있다.	② ------ 환경공무직----------.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환경미화원 징계처분 기준 중 해고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환경공무직 ----------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별표1, 별표2,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현 행	개 정 안
[별표1]	[별표1]
제 목 : 환경미화원 근무시간	제 목 : 환경공무직 근무시간
[별표2]	[별표2]
제 목 : 환경미화원 징계처분 기준(제19조관련)	제 목 : 환경공무직 징계처분 기준(제19조관련)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제 목 : 환경미화원 신상카드	제 목 : 환경공무직 징계처분 기준(제19조관련)
[별제 제4호서식]	[별제 제4호서식]
본 문 : 울산광역시남구환경미화원복무규칙	본 문 : 울산광역시남구환경공무직복무규칙

관련법규

□ 「2020년 환경공무직 단체협약서」

제1조 (노사호칭) 단체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 사용자인 울산광역시 산하 사업소를 대표하는 울산광역시장 및 각 구청장·군수를 공동으로 “갑”이라 하고, 근로자를 대표하는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울산광역시청노동조합위원장을 “을”이라 한다. 〈개정 2003. 7. 8., 개정 2013. 1. 8., 2015. 2. 25.〉

제2조 (교섭권한 및 적용범위) ① “갑”은 “을”을 울산광역시 산하 사업소 및 구청·군청에 종사하는 환경공무직(이하 “조합원”이라 한다)을 교섭단체로 인정하여 조합원의 근로조건 향상, 기타 제반 사항을 협약 체결한다. 〈개정 2013. 1. 8., 2021. 1. 12.〉

② “갑”은 전 조합원의 단체교섭을 “을”을 통해서만 행하고 “갑”과 “을” 간에 합의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1-557호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4월 2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그 밖의 운영상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에 불일치하여 관련 조항 정비

○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 위원 연임규정 삭제(안 제3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 불필요 조문 삭제(안 제25조, 제31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 제38조제1항제25호(2018. 1. 9. 삭제)

○ “채광물 채취료 등”을 법률 용어인 “토석의 매각대금 등”으로 변경하

고, 관련 법률상 매각 규정에 매각대금은 감정평가법인등에 의한 평가액으로 개정(안 제29조)

: 「산지관리법」 제2조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8조에 따른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 삭제 및 수정(안 제30조제3항 및 제4항)

○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공유재산심의회 생략 규정 삭제 및 관련 용어 현행화(안 제4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11조

나. 상위 법령 개정 사항 반영

○ 대부료의 감액 조정 비율 확대(안 제33조)

(“100분의 70” → “100분의 100”)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4조

○ 대부료의 납부 부담 완화(안 제34조)

(“연 4회” → “연 6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2조

다. 개별 법령 개정 사항 반영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으로 인용 조항 변경(안 제31조)

: 제13조제9항 → 제13조의2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규정된 법률 용어 반영(안 제27조, 제37조, 제62조의2)

: 개별급여수급자 → 수급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66조)

: 감정평가업자 → 감정평가법인등

○「울산광역시 남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인용 용어 정비(안 제32조)

:「울산광역시 남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울산광역시 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3. 근거법규

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1조, 제34조, 제46조

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 제7조의2, 제14조, 제16조, 제32조, 제34조, 제35조, 제50조

다.「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의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

라.「산지관리법」제2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

마.「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8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1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참조: 총무과, 전화 226-5501, 팩스 226-525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6. 참고사항

개정 조례안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ulsannamgu.go.kr)에 첨부물로 올려놓겠습니다. 총무과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울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울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조의2제5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대장가액”을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중 “그소관”을 “그 소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5조 중 “영 제9조제1항제4호, 제23조, 제32조제3항, 제38조제1항제25호”를 “영 제23조, 제32조제3항”으로,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외국인투자 촉진법」”으로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를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외국인 투자촉진법」”를 “「외국인투자 촉진법」”로 한다.

제27조제3항제3호 중 “개별급여수급자”를 “수급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채광물 채취료 등)”을 “(토석의 매각대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채광물 가격은 용도별로 구분하여 산정하고,”를 “제1항의 토석 가격을 결정할 때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① 제27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의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제30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결정할 때에는 건물 및 부지의 대부 면적은 대부를 받는 사람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른다.

1. 건물의 공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 ×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2. 부지의 공용면적 =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 ×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 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 ÷ 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바목 중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2조제4항 중 “「울산광역시 남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울산광역시 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액 조정하는 감액률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를 “전부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34조제2항제1호 중 “3개월 이내(2회 분납 가능)”를 “6개월 이내(3회 분납 가능”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6개월 이내(3회 분납 가능)”를 “8개월 이내(4회 분납 가능)”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9개월 이내(4회 분납 가능”을 “10개월 이내(5회 분납 가능)”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4. 400만원 초과: 12개월 이내(6회 분납 가능)

제37조제1항제4호 중 “개별급여수급자”를 “수급자”로 한다.

제40조 중 “공유재산을 관리처분사무”를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사무”로 한다.

제48조 중 “「울산광역시 건축조례」”를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로 한다.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사항”을 “다음 사항”으로 한다.

제62조의2제3호 중 “개별급여수급자”를 “수급자”로 한다.

제66조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에게”를 “감정평가법인등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① ~ ⑤ (생 략)	제3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제3조의2(공유재산심의회 운영) ① ~ ④ (생 략)	제3조의2(공유재산심의회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생 략)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3.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 ----------

4.다음 각 목의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 가.특별시・광역시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330제곱미터 이하 토지 (해당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삭 제>
나. 삭 제	
다. 삭 제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소관 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 ---------- ---------- ---------- 그 소관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생 략)	제18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각 호-------- ----------.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1항제4호, 제23조, 제32조제3항, 제38조제1항제25호,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른다.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23조, 제32조제3항----------「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6조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5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 투자기업 등” 이라한다)에 대부 ·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6조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4.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18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 촉진법」 ----------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② (생 략)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	③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별급여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 ---------- ---------- 수급자-------- ----------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	④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 ---------- ---------- ----------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29조(채광물 채취료 등) ① 제2	제29조(토석의 매각대금 등) ①

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원석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원석 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의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의 “원석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채광물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단서삭제 2016・12・30>	<삭 제>
③ 제2항의 채광물 가격은 용도별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토석 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 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 감정평가법인등----------.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채광물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	<삭 제>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채광물에 대하여는 채광물 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30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② (생 략) ③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당해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지상 2층건물을 대부하는 경우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 지상 3층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라 4층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3. 지상 1층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다 지하3층이하는 부지평가액	제30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의 5분의 1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하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④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다. 대부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 (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④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결정할 때에는 건물 및 부지의 대부 면적은 대부를 받는 사람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른다. 1. 건물의 공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 ×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2. 부지의 공용면적 =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 ×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 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 ÷ 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1조(대부료의 감면) ①「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영 제3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1조(대부료의 감면) ①「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항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	3.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	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사. (생 략)	사.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 ~ ③ (생 략)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울산광역시 남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④---------- 「울산광역시 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3조(대부료에 관한 특례) 영 제34조에 따른 해당 연도의 대부료가 전년도의 대부료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률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33조(대부료에 관한 특례) ---------- 전부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제34조(대부료의 납기) ① (생략)	제34조(대부료의 납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만원 초과: 3개월 이내(2회 분납 가능) 2. 200만원 초과: 6개월 이내(3회 분납 가능) 3. 300만원 초과: 9개월 이내(4회 분납 가능	② ----------. 1. ---------- 6개월 이내(3회 분납 가능) 2. ---------- 8개월 이내(4회 분납 가능) 3. 300만원 초과: 10개월 이내(5회 분납 가능) 4. 400만원 초과: 12개월 이내(6회 분납 가능)
<신 설>	
③ 삭 제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	<삭 제>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
1. 삭 제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별급여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4. ---------- 수급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0조(매각의 승인)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관리처분사무를 위임 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매각의 승인) ----------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사무----------.
제48조(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건축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8조(건축위원회의 심의) ----------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제53조(사용책임) ----------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다음 사항----------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62조의2(변상금의 징수유예) 영 제81조에 따라 무단점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제62조의2(변상금의 징수유예)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별급여수급자일 경우	3. ---------- 수급자----------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할)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할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할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할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할) ---------- 감정평가법인등에 ---------.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한다.	

근 거 법 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2.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2010. 2. 4.]

제34조(대부료의 감면)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일반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대부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46조(가격 평가 등) 공유재산의 가격 평가 등 회계처리는 「지방회계법」 제12조에 따른 회계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 5. 29.>

[전문개정 2010. 2.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개정

2016. 8. 31.>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 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건물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건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전문개정 2014. 7. 7.]

제7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0. 3. 31.>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7. 20.]

제14조(사용료) ⑦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3. 6. 21., 2016. 7. 12., 2017. 7. 26., 2020. 12. 22.>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사용료는 1년(납부기한을 기 준

으로 하여 남은 사용·수익허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사용·수 익허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2.>

제16조(사용료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 사용료(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받거나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사용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7. 7., 2020. 3. 31., 2020. 12. 22.>
[전문개정 2009. 4. 24.]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대부 전에 미리 내야 한다.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3. 6. 21., 2016. 7. 12., 2017. 7. 26., 2020. 12. 22.>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1., 2016. 7. 12., 2017. 7. 26.>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대부료는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대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대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2.>

제34조(대부료의 조정) 법 제3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부료를 감경받거나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대부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7. 7., 2020. 3. 31., 2020. 12. 22.>
[전문개정 2009. 4. 24.]

제35조(대부료의 감면) 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7. 12., 2018. 12. 4., 2020. 12. 22.>

1. 제29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대부하는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4. 제29조제1항제14호·제15호 또는 제23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로서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대부료를 감면하지 않는다. <개정 2011. 11. 16., 2016. 7. 12., 2018. 12. 4., 2020. 12. 22.>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가.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한 경우
나. 제29조제1항제20호·제25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
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③ 삭제 <2016. 7. 12.>
[전문개정 2009. 4. 24.]

제50조(대장가격) 공유재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나 공유재산을 이미 취득했으나 아직 대장가격이 없는 경우 그 가격을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할 때에는 법 제46조에 따른 금액으로 기록한다.[전문개정 2020. 12. 22.]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8조(사용료 등 부과·징수) ①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부과·징수를 하는 경우 <별표 3>의 내용을 참고한다.

<별표 3> **사용료, 대부료 등의 부과·징수 기준** (제8조 관련)

1. 사용·대부료 산정방법

가. 건물 전체를 사용·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나. 건물의 일부를 사용·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의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하여 산출한다.

다. 토지·건물 공용면적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른다.

1)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text{해당건물의 총 공용면적} \times \frac{\text{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text{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2)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text{해당부지의 총 공용면적} \times \frac{\text{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text{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 사용·대부 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은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부지를 말하고,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은 특정인이 사용하는 부지전용면적을 제외한 건물을 사용하는 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지면적을 말함.

(특정인이 사용하는 부지전용면적이 없는 경우 부지공용면적은 해당 토지 전체 면적이 됨)

※ 건물의 부지면적 산출이 곤란한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을 역산(건물 바닥면적 ÷ 건폐율)하여 부지면적 산출 가능

예시) 부지가 넓은 공원의 매점 등

□「산지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22., 2014. 6. 3., 2016. 12. 2., 2018. 3. 20., 2020. 2. 18.>

1. “산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주택지[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지목이 대(垈)로 변경된 토지를 말한다] 및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농지, 초지(草地), 도로, 그 밖의 토지는 제외한다.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

나. 입목(立木)·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生育)하고 있는 토지

다.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대나무가 일시 상실된 토지

라. 입목·대나무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마. 임도(林道), 작업로 등 산길

바.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 및 소택지(沼澤地)

2. “산지전용”(山地轉用)이란 산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가. 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나.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성토(흙쌓기) 또는 절토(땅깎기)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산지일시사용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토석의 매각계약 등) ①지방산림청장·국유림관리소장·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토석을 매각할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토석매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 13., 2006. 1. 26., 2007. 7. 27., 2009. 4. 20., 2011. 1. 5.>

② 토석의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5만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해당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허가지역에서 반출하기 위해 누적된 토석채취량을 말한다)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1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 1. 5., 2012. 10. 26., 2016. 12. 30., 2019. 12. 3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2. 30.>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4. 7.>

1. “토지등”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
2. “감정평가”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價額)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감정평가업”이란 타인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업(業)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감정평가법인등”이란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국유·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소유의 토지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있는 토지등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업단지”라 한다)에 있는 토지등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있는 토지등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 소유의 토지등을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32조 제1항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 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외국인투자 기업등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4조·제 32조 및 제3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 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대하는 토지등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토지등인 경우 그 임대기간은 같은 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내로 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제4항에 따른 기을 초

과할 수 없다.[본조신설 2020. 2. 4.]

울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1-559호

「울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4월 2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울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환경부의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2019.03.)에 따라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종량제봉투의 용량을 변경하고,

나. 상위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맞게 과태료 처분 서식을 정비하며,

다. 대형폐기물의 품명 세분화 및 적정 처리수수료 징수기준을 정비하고,

라.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환경공무직”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관련 조항을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명칭변경: 환경미화원 → 환경공무직(안 제24조제1항)

나. 종량제봉투 용량 변경: 100ℓ → 75ℓ(안 별표1, 별표2, 별표3)

다. 대형폐기물의 품명 및 처리수수료 징수기준 개정(안 별표4)

라.「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맞게 서식 삭제(안 별지 제1호서식 및 제3호서식)

3. 근거법규

가.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2019.03. 환경부)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라. 「2020년 환경공무직 단체협약서」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1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참조: 환경관리과장, 전화 226-5771, 팩스 226-5263)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6. 참고사항

개정 조례안은 우리구 홈페이지(http://www.ulsannamgu.go.kr)에 첨부물로 올려놓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남구청 환경관리과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의 견 서

조 례 명	울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관련 조문	검 토 의 견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4월 일

제출자 (서명)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직”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은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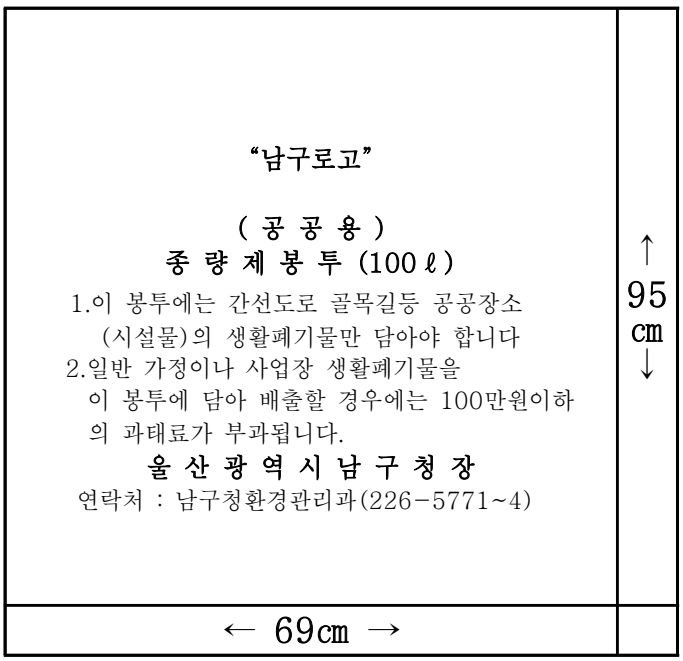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판매된 100리터 일반용 종량제봉투의 사용기한은 기 제작·판매된 100리터 일반용 종량제봉투의 소진시까지로 한다.

[별표 1] <개정>

종량제봉투의 용량·용도·색상(제14조제2항 관련)

용 량(ℓ)	용 도	색 상	재 질
5	일반용	흰색(반투명)	폴리에틸렌
10	일반용	흰색(반투명)	
20	일반용	흰색(반투명)	
50	일반용	청색	
75	일반용	청색	
30	특수규격 (공사장생활폐기물)	엷은 녹색	폴리프로필렌(PP)
50	특수규격 (공사장생활폐기물)	엷은 녹색	
100	공공용	흰색	

공공용 봉투의 용량 및 용도



(주) 실제 사용할 종량제봉투 제작시에는 봉투상단에 봉투용량에 포함되지 않는 여분을 두어 생활폐기물을 담은 후 묶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2] <개정>

종량제봉투의 사양(제15조제3항 관련)

□ 일반용봉투 크기

(단위:㎝)

용 량	내 용 물 규 격 (접는 부분 포함 : 가로×세로)	묶 는 부 분 (세 로)
5 ℓ	26×33.5	13(손잡이 있음)
10 ℓ	33×41.5	15(손잡이 있음)
20 ℓ	42×50.5	19(손잡이 있음)
50 ℓ	56×68.5	23(손잡이 있음)
75 ℓ	65×78.5	25(손잡이 있음)

□ 특수규격봉투 크기

(단위:㎝)

용 량	내 용 물 규 격 (접는 부분 포함 : 가로×세로)	비 고
30 ℓ	48×78.5	
50 ℓ	56×91.5	

□ 일반용·특수규격봉투 문장

○ 전 면

	가 로
묶는 부분	이 곳은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세 로	- (울산광역시 남구의 문장) - - (봉 투 용 량) - - 용 도 - - 주 의 사 항 - - 울 산 광 역 시 남 구 - - 전 화 번 호 -

○ 후 면

규격봉투 크기 범위 내 적정 규모 (공 익 광 고)

[별표3] <개정>

종량제봉투의 공급·판매가격(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용량(ℓ)		공급액				판매수수료	판매액
		계	수집·운반비	처리비	봉투제작비		
일반용	5ℓ	146	124	5	17	14	160
	10ℓ	282	248	9	25	28	310
	20ℓ	546	489	17	40	54	600
	50ℓ	1,356	1,220	48	88	134	1,490
	75ℓ	2,020	1,827	72	121	200	2,220
특수규격	30ℓ	1,965	1,302	443	220	195	2,160
	50ℓ	3,166	2,170	737	259	314	3,480

(주) ① 규격봉투 공급액 산출기초(판매액은 5원이상 절상, 5원미만 절하가격임)
② 규격봉투 용량별 공급액 증감차액분은 봉투제작비에 수용 조정한다

[별표4] <개정>

대형폐기물의 품명 및 처리수수료(제17조제1항제4호관련)

연번	품 명	규 격	금 액	연번	품 명	규 격	금 액
1	가 방	골프가방	4,000	22	상(교자상 등)	6인용 이상	3,000
		여행용(화물용)	3,000			6인용 미만	2,000
		여행용(기내용)	2,000	23	서랍장	5단 이상	10,000
		그 외	1,000			5단 미만	7,000
2	가스레인지	일반 규격	2,000	24	세면대	일반 규격	5,000
3	가스레인지대	일반 규격	2,000	25	소화기	일반 규격	3,000
4	간 판	길이 2m 이상	6,000	26	쇼 파	3인용	10,000
		길이 2m 미만	4,000			2인용	7,000
5	개 집	일반 규격	4,000			1인용	5,000
6	금 고	가로 60cm 이상	50,000			스툴 및 보조의자	3,000
		가로 60cm 미만	30,000	27	수도호스	10m 당	2,000
7	기름 탱크	400L 이상	6,000	28	수족관 (어항)	길이 2m 이상	7,000
		400L 미만	4,000			2m미만~1m이상	5,000
8	깨진 유리	1kg 당	2,000			길이 1m 미만	3,000
9	돌, 흙침대	2인용	30,000	29	시 계 (벽시계 등)	대 형	5,000
		1인용	20,000			중 형	3,000
10	마네킹	일반 규격	5,000			소 형	2,000
11	목재류	정원수 (100L 마대)	9,000	30	식탁 (유리별도) — 목 재	6인용 이상	7,000
		폐목재류 (10kg 당)	2,000			6인용 미만	5,000
12	문 갑	1짝 당	4,000		대리석	6인용 이상	10,000
13	문 짝	일반 규격	4,000			6인용 미만	7,000
14	물탱크 (FRP)	3톤 이상	30,000	31	신발장	높이 1m 이상	6,000
		3톤미만~1톤이상	20,000			높이 1m 미만	4,000
		1톤 미만	15,000	32	쌀 통	일반 규격	3,000
15	배기후드	일반 규격	2,000	33	씽크대	길이 1m 이상(1쪽)	10,000
16	변 기 (물통포함)	양변기	10,000			길이 1m 미만(1쪽)	7,000
		좌변기(소형)	5,000	34	씽크찬장	1쪽 당	4,000
17	병 풍	일반 규격	3,000	35	액 자 (거울포함)	1m×1m 이상	5,000
18	보일러	기름 일반 규격	7,000			1m×1m 미만	3,000
		연탄, 가스 일반 규격	6,000	36	오디오장식장	일반 규격	4,000
19	보행기	일반 규격	2,000	37	옷걸이	스탠드형	2,000
20	블라인드	일반 규격	3,000	38	요(담요)	장 당	3,000
21	비디오테이프	20L당	2,000				

연번	품 명	규 격	금 액	연번	품 명	규 격	금 액
39	욕 조	길이 2m 이상	20,000	54	책 상	양수(대형)	7,000
		2m미만~1m이상	10,000			편수(소형)	5,000
		길이 1m 미만	7,000			책장세트	12,000
40	우 산	일반 규격	1,000	55	책꽂이	1단	2,000
41	운동기구	러닝머신	10,000	56	침 대	라텍스(2인용)	10,000
		기타	3,000			라텍스(1인용)	5,000
42	유모차	일반 규격	3,000			매트리스(2인용)	15,000
43	의 자	안마의자	15,000			매트리스(1인용)	10,000
		일반의자	3,000			유아용	10,000
		보조의자(플라스틱)	1,000	57	침대 받침대	2인용	8,000
44	이 불(돗자리)	솜이불	3,000			1인용	5,000
		홑이불	2,000	58	카시트(유아용)	일반 규격	2,000
		돗자리	2,000	59	카 펫	1㎡ 당	3,000
45	인형, 장난감류	20L 당	1,000	60	칸막이(판넬)	1m 당	4,000
46	자전거	성인용	3,000	61	캐비닛	높이 1m 이상	8,000
		유아용	2,000			높이 1m 미만	4,000
47	장 독(항아리)	20L 이상	4,000	62	텐 트(천막)	100L마대 기준	7,000
		20L 미만	2,000	63	텔레비전 받침대	일반 규격	4,000
48	장 판	5m 당	4,000	64	평 상	2m x 2m 이상	15,000
49	장 롱	길이 120cm 이상	15,000			2m x 2m 미만	10,000
		길이 120cm 미만	12,000	65	피아노	그랜드	25,000
50	전기매트(옥매트, 온수매트)	2인용 이상	8,000			업라이트	18,000
		1인용	5,000			디지털	15,000
51	전등 기구류(형광등 류)	장식용	5,000	66	합 판	장 당	3,000
		일반용	1,000	67	화 분	대형	2,000
52	진열장, 장식장, 책장(문유리 포함)	길이 120cm 이상	15,000			소형	1,000
		120cm미만~90cm이상	12,000	68	화장대	길이 120㎝ 이상	7,000
		길이 90cm 미만	10,000			120㎝미만~90cm이상	6,000
53	창 문(틀)	일반 규격	2,000			길이 90cm 미만	5,000
				69	가정배출소량폐기물	40kg 기준	6,000

주) 1. 일반가정, 소규모사업장, 건축폐기물은 수집·운반 수수료이며, 대형폐기물은 처리비 포함 가격임.

2.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처리수수료의 부과기준에 솜, 스티로폼, 압축하지 않은 캔, 드럼통 등과 같이 무게에 비하여 지나치게 부피가 큰 경우의 처리 수수료 부과기준은 세제곱미터(㎥)단위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3. 일반폐기물의 최종처리 과정에서 성분시험, 계근 등을 실시하여 수집·운반업자가 수수료 등을 납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배출자에게 그 수수료 등의 실비를 수집·운반 수수료에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4. 열거되지 아니한 대형 생활폐기물은 표에 열거된 품목중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삭제>**

제 호

수 신
제 목 : 과태료처분통지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된 과태료처분은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재판을 받게 됩니다.

첨 부 : 과태료납부통지서 1부

년 월 일

울 산 광 역 시 남 구 청 장

[별지 제3호서식] **<삭제>**

(갑)
(처분기관 보관용)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계좌번호	
위반행위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간	까지	납부장소	
위반사실	일시		내용			
위반법률	폐기물관리법 제 호		발부일자	의견진술기간		까지
위반행위자	서명		생년월일	단속공무원확인		

특기사항

168㎜×118㎜(인쇄용지〔특급〕) 34g/㎡

(을)
(피처분자 통지용)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계좌번호	
위반행위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간	까지	납부장소	
위반사실	일시		내용			
위반법률	폐기물관리법 제 호		발부일자	의견진술기간		까지
위반행위자	서명		생년월일	단속공무원확인		

1.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처리법 제63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울 산 광 역 시 남 구 청 장 (인)

168㎜×118㎜(인쇄용지〔특급〕) 34g/㎡

(병)
(수납은행 보관용)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계좌번호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간	까지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날자도장

울 산 광 역 시 남 구 청 장 (인)

(정)
(개인통지용)

과 태 료 납 부 서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계좌번호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간	까지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날자도장 취급자인

울 산 광 역 시 남 구 청 장 (인)

168㎜×118㎜(인쇄용지〔특급〕) 34g/㎡

(무)
(구 통보용)

과 태 료 납 부 영 수 필 통 지 서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계좌번호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간	까지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날자도장

울 산 광 역 시 남 구 청 장 (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 (생활폐기물 불법소각·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 ①구청장은 불법소각 및 불법투기 행위로 인한 생활환경 오염방지를 위해 생활폐기물 불법소각·투기 신고 포상금과 생활폐기물 불법 수거 및 가짜 종량제봉투의 불법 유통 신고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구산하 공무원, 환경미화원, 공익근무요원을 제외한다)에게는 건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포상금은 현금 또는 현물(문화상품권, 재래시장상품권 등)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신고에 따라 고발 및 그 밖에 행정처분 되었을 때에 한하며, 담배꽁초투기에 대한 신고 포상금과 생활폐기물 불법 수거 및 가짜 종량제봉투의 불법 유통 신고 포상금은 해당연도 해당예산의 1/2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 4. (생 략) ② (생 략)	제24조 (생활폐기물 불법소각·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 ① ---------- 환경공무직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별표 1, 별표2, 별표3, 별표4)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종량제봉투의 용량·용도·색상
(제14조제2항 관련)

용량(ℓ)	용도	색상	재질
5	일반용	흰색(반투명)	폴리에틸렌
10	일반용	흰색(반투명)	
20	일반용	흰색(반투명)	
50	일반용	청색	
100	일반용	청색	
30	특수규격 (공사장생활폐기물)	엷은 녹색	폴리프로필렌(PP)
50	특수규격 (공사장생활폐기물)	엷은 녹색	
100	공공용	흰색	

공공용 봉투의 용량 및 용도

(생 략)

[별표 1]

종량제봉투의 용량·용도·색상
(제14조제2항 관련)

용량(ℓ)	용도	색상	재질
5	일반용	흰색(반투명)	폴리에틸렌
10	일반용	흰색(반투명)	
20	일반용	흰색(반투명)	
50	일반용	청색	
75	일반용	청색	
30	특수규격 (공사장생활폐기물)	엷은 녹색	폴리프로필렌(PP)
50	특수규격 (공사장생활폐기물)	엷은 녹색	
100	공공용	흰색	

공공용 봉투의 용량 및 용도

(현행과 같음)

현 행

[별표 2]

종량제봉투의 사양 (제15조제3항 관련)

□ 일반용봉투 크기

(단위:㎝)

용량	내용물 규격 (접는 부분 포함: 가로×세로)	묶는 부분 (세 로)
5ℓ	26×33.5	13(손잡이 있음)
10ℓ	33×41.5	15(손잡이 있음)
20ℓ	42×50.5	19(손잡이 있음)
50ℓ	56×68.5	23(손잡이 있음)
100ℓ	71×86.5	27(손잡이 있음)

□ 특수규격봉투 크기

(생 략)

□ 일반용·특수규격봉투 문장

(생 략)

[별표 3]

종량제봉투의 공급·판매가격 (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용량(ℓ)		공 급 액				판매 수수료	판매액
		계	수집·운반비	처리비	봉투 제작비		
일반용	5ℓ	146	124	5	17	14	160
	10ℓ	282	248	9	25	28	310
	20ℓ	546	489	17	40	54	600
	50ℓ	1,356	1,220	48	88	134	1,490
	100ℓ	2,694	2,434	96	164	266	2,960
특수규격	30ℓ	1,965	1,302	443	220	195	2,160
	50ℓ	3,166	2,170	737	259	314	3,480

(주)① 규격봉투 공급액 산출기초(판매액은 5원이상 절상, 5원미만 절하가격임)

② 규격봉투 용량별 공급액 증감차액분은 봉투 제작비에 수용 조정한다.

개 정 안

[별표 2]

종량제봉투의 사양 (제15조제3항 관련)

□ 일반용봉투 크기

(단위:㎝)

용량	내용물 규격 (접는 부분 포함: 가로×세로)	묶는 부분 (세 로)
5ℓ	26×33.5	13(손잡이 있음)
10ℓ	33×41.5	15(손잡이 있음)
20ℓ	42×50.5	19(손잡이 있음)
50ℓ	56×68.5	23(손잡이 있음)
75ℓ	65×78.5	25(손잡이 있음)

□ 특수규격봉투 크기

(현행과 같음)

□ 일반용·특수규격봉투 문장

(현행과 같음)

[별표 3]

종량제봉투의 공급·판매가격 (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용량(ℓ)		공 급 액				판매 수수료	판매액
		계	수집·운반비	처리비	봉투 제작비		
일반용	5ℓ	146	124	5	17	14	160
	10ℓ	282	248	9	25	28	310
	20ℓ	546	489	17	40	54	600
	50ℓ	1,356	1,220	48	88	134	1,490
	75ℓ	2,020	1,827	72	121	200	2,220
특수규격	30ℓ	1,965	1,302	443	220	195	2,160
	50ℓ	3,166	2,170	737	259	314	3,480

(주)① 규격봉투 공급액 산출기초(판매액은 5원이상 절상, 5원미만 절하가격임)

② 규격봉투 용량별 공급액 증감차액분은 봉투 제작비에 수용 조정한다.

현 행

［별표 4］

대형폐기물의 품명 및 처리수수료 (제17조제1항제4호 관련)

연번	품 명	규 격	금 액	연번	품 명	규 격	금 액
1	가스레인지대	모든 규격	2,000	24	옷걸이	모든 규격	1,000
2	교자상	모든 규격	2,000	25	욕조	모든 규격	5,000
3	나무묶음	직경 40cm	2,000	26	유리(거울, 판유리)	1㎡ 당	2,000
4	다림이판	모든 규격	1,000	27	유모차	모든 규격	2,000
5	문갑	모든 규격	3,000	28	이불(담요, 솜이불)	장당	2,000
6	물탱크(저수조)	1톤 용량당	5,000	29	의자	모든 규격	2,000
7	배기후드	모든 규격	2,000	30	자전거	모든 규격	2,000
8	벽시계	소형	2,000	31	장농	120cm 이상 1쪽	15,000
		중형	3,000			120cm 미만 1쪽	10,000
		대형	5,000	32	장식장	모든 규격	4,000
9	변기	좌변기(소형)	5,000	33	장판	5m 당	2,000
		양변기	10,000	34	책꽂이	모든 규격	2,000
10	보일러	20평 미만	3,000	35	책상	양수책상	7,000
		20평 이상	5,000			편수책상	4,000
11	보일러기름탱크	모든 규격	2,000	36	침대매트리스	1인용	10,000
12	보행기	모든 규격	2,000			2인용	15,000
13	비키니옷장	모든 규격	2,000		돌・옥・황토침대	1인용	15,000
14	서랍장	5단 미만	2,000			2인용	20,000
		5단 이상	4,000	37	침대받침대	1인용	5,000
15	쇼파	3인 이상	5,000			2인용	8,000
		2인 이하	2,000	38	파일케비넷	4단 이상	3,000
16	수도호스	10m 당	2,000			3단 이하	2,000
17	식탁(테이블)	6인용 미만	4,000	39	캐비넷	모든 규격	4,000
		6인용 이상	5,000	40	텔레비전대	모든 규격	3,000
18	신발장	모든 규격	2,000	41	피아노	모든 규격	15,000
19	쌀통	모든 규격	2,000	42	울 겐	모든 규격	4,000
20	씽크대	60cm 1짝당	3,000	43	항아리	소형	2,000
21	액자	소형	1,000	44	화장대	모든 규격	3,000
		대형	2,000	45	화분	소형	1,000
22	어항	1m 미만	3,000			대형	2,000
		1m 이상	5,000	46	가정배출소량폐기물	40㎏ 기준	6,000
23	오디오장식장	모든 규격	3,000				

주) 1. 일반가정, 소규모사업장, 건축폐기물은 수집・운반 수수료이며, 대형폐기물은 처리비 포함 가격임.

2.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처리수수료의 부과기준에 솜, 스티로폼, 압축하지 않은 캔, 드럼통 등과 같이 무게에 비하여 지나치게 부피가 큰 경우의 처리 수수료 부과기준은 세제곱미터(㎥)단위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3. 일반폐기물의 최종처리 과정에서 성분시험, 계근 등을 실시하여 수집・운반업자가 수수료 등을 납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배출자에게 그 수수료 등의 실비를 수집・운반 수수료에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4. 열거되지 아니한 대형 생활폐기물은 표에 열거된 품목중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한다.

개 정 안

[별표 4]

대형폐기물의 품명 및 처리수수료 (제17조제1항제4호 관련)

연번	품 명	규 격	금 액	연번	품 명	규 격	금 액
1	가 방	골프가방	4,000	22	상(교자상 등)	6인용 이상	3,000
		여행용(화물용)	3,000			6인용 미만	2,000
		여행용(기내용)	2,000	23	서랍장	5단 이상	10,000
		그 외	1,000			5단 미만	7,000
2	가스레인지	일반 규격	2,000	24	세면대	일반 규격	5,000
3	가스레인지대	일반 규격	2,000	25	소화기	일반 규격	3,000
4	간 판	길이 2m 이상	6,000	26	쇼 파	3인용	10,000
		길이 2m 미만	4,000			2인용	7,000
5	개 집	일반 규격	4,000			1인용	5,000
6	금 고	가로 60cm 이상	50,000			스툴 및 보조의자	3,000
		가로 60cm 미만	30,000	27	수도호스	10m 당	2,000
7	기름 탱크	400L 이상	6,000	28	수족관 (어항)	길이 2m 이상	7,000
		400L 미만	4,000			2m미만~1m이상	5,000
8	깨진 유리	1kg 당	2,000			길이 1m 미만	3,000
9	돌, 흙침대	2인용	30,000	29	시 계 (벽시계 등)	대 형	5,000
		1인용	20,000			중 형	3,000
10	마네킹	일반 규격	5,000			소 형	2,000
11	목재류	정원수 (100L 마대)	9,000	30	식탁 (유리별도) — 목 재	6인용 이상	7,000
		폐목재류 (10kg 당)	2,000			6인용 미만	5,000
12	문 갑	1짝 당	4,000		대리석	6인용 이상	10,000
13	문 짝	일반 규격	4,000			6인용 미만	7,000
14	물탱크 (FRP)	3톤 이상	30,000	31	신발장	높이 1m 이상	6,000
		3톤미만~1톤이상	20,000			높이 1m 미만	4,000
		1톤 미만	15,000	32	쌀 통	일반 규격	3,000
15	배기후드	일반 규격	2,000	33	씽크대	길이 1m 이상(1쪽)	10,000
16	변 기 (물통포함)	양변기	10,000			길이 1m 미만(1쪽)	7,000
		좌변기(소형)	5,000	34	씽크찬장	1쪽 당	4,000
17	병 풍	일반 규격	3,000	35	액 자 (거울포함)	1m×1m 이상	5,000
18	보일러	기름 일반 규격	7,000			1m×1m 미만	3,000
		연탄, 가스 일반 규격	6,000	36	오디오장식장	일반 규격	4,000
19	보행기	일반 규격	2,000	37	옷걸이	스탠드형	2,000
20	블라인드	일반 규격	3,000	38	요(담요)	장 당	3,000
21	비디오테이프	20L 당	2,000				

개 정 안

연번	품 명	규 격	금 액	연번	품 명	규 격	금 액
39	욕 조	길이 2m 이상	20,000	54	책 상	양수(대형)	7,000
		2m미만~1m이상	10,000			편수(소형)	5,000
		길이 1m 미만	7,000			책장세트	12,000
40	우 산	일반 규격	1,000	55	책꽂이	1단	2,000
41	운동기구	러닝머신	10,000	56	침 대	라텍스(2인용)	10,000
		기타	3,000			라텍스(1인용)	5,000
42	유모차	일반 규격	3,000			매트리스(2인용)	15,000
43	의 자	안마의자	15,000			매트리스(1인용)	10,000
		일반의자	3,000			유아용	10,000
		보조의자(플라스틱)	1,000	57	침대 받침대	2인용	8,000
44	이 불 (돗자리)	솜이불	3,000			1인용	5,000
		홑이불	2,000	58	카시트(유아용)	일반 규격	2,000
		돗자리	2,000	59	카 펫	1㎡ 당	3,000
45	인형, 장난감류	20L 당	1,000	60	칸막이(판넬)	1m 당	4,000
46	자전거	성인용	3,000	61	캐비닛	높이 1m 이상	8,000
		유아용	2,000			높이 1m 미만	4,000
47	장 독 (항아리)	20L 이상	4,000	62	텐 트(천막)	100L마대 기준	7,000
		20L 미만	2,000	63	텔레비전 받침대	일반 규격	4,000
48	장 판	5m 당	4,000	64	평 상	2m x 2m 이상	15,000
49	장 롱	길이 120cm 이상	15,000			2m x 2m 미만	10,000
		길이 120cm 미만	12,000	65	피아노	그랜드	25,000
50	전기매트(옥매트, 온수매트)	2인용 이상	8,000			업라이트	18,000
		1인용	5,000			디지털	15,000
51	전등 기구류 (형광등 류)	장식용	5,000	66	합 판	장 당	3,000
		일반용	1,000	67	화 분	대형	2,000
52	진열장, 장식장, 책장(분유리 포함)	길이 120cm 이상	15,000			소형	1,000
		120cm미만~90cm이상	12,000	68	화장대	길이 120㎝ 이상	7,000
		길이 90cm 미만	10,000			120㎝미만~90cm이상	6,000
53	창 문(틀)	일반 규격	2,000			길이 90cm 미만	5,000
				69	가정배출소량폐기물	40kg 기준	6,000

주) 1. 일반가정, 소규모사업장, 건축폐기물은 수집·운반 수수료이며, 대형폐기물은 처리비 포함 가격임.

2.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처리수수료의 부과기준에 솜, 스티로폼, 압축하지 않은 캔, 드럼통 등과 같이 무게에 비하여 지나치게 부피가 큰 경우의 처리 수수료 부과기준은 세제곱미터(㎥)단위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3. 일반폐기물의 최종처리 과정에서 성분시험, 계근 등을 실시하여 수집·운반업자가 수수료 등을 납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배출자에게 그 수수료 등의 실비를 수집·운반 수수료에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4. 열거되지 아니한 대형 생활폐기물은 표에 열거된 품목중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남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 : 예상되는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2.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에 해당

❍ 2021년 당초 예산 반영(안)

- **일반용 종량제봉투 제작**

  - 100리터: 219원×720,000매=157,680천원

  (기 제작) 100리터 종량제봉투 : 219원×155,000매=33,945천원

  (제작 예정) 75리터 종량제봉투 : 175원×700,000매=122,500천원

3. 작성자

❍ 환경관리과 지방행정주사 김홍성(052-226-5771)

관 련 법 규

□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2019.03. 환경부)

○ 종량제 봉투, 폐가구 등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음식물류 폐기물, 공사장 생활계 폐기물 등 수집·운반 작업(자동상차장치를 활용하지 않는 작업) 중에 미화원 1인이 들기 어렵거나 다음의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작업은 3인 1조 이상(운전원 1, 상차원 2) 작업을 원칙으로 함

※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13호) 제3조(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제8호내지 제10호 해당하는 작업

8.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9.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10.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⑤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 「2020년 환경공무직 단체협약서」

제1조 (노사호칭) 단체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 사용자인 울산광역시 산하 사업소를 대표하는 울산광역시장 및 각 구청장·군수를 공동으로 “갑”이라 하고, 근로자를 대표하는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울산광역시청 노동조합위원장을 “을”이라 한다. 〈개정 2003. 7. 8., 개정 2013. 1. 8., 2015. 2. 25.〉

제2조 (교섭권한 및 적용범위) ① “갑”은 “을”을 울산광역시 산하 사업소 및 구청·군청에 종사하는 **환경공무직(이하 “조합원”이라 한다)을 교섭단체로 인정**하여 조합원의 근로조건 향상, 기타 제반 사항을 협약 체결한다. 〈개정 2013. 1. 8., 2021. 1. 12.〉

② “갑”은 전 조합원의 단체교섭을 “을”을 통해서만 행하고 “갑”과 “을” 간에 합의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1-560호

「울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4월 2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울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부의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2019.03.)에 따라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종량제봉투의 용량을 변경하고, 가정용 종량제봉투의 명칭을 일반용 종량제봉투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관련 조항을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명칭변경: 가정용 종량제봉투 → 일반용 종량제봉투(안 제13조제3항)
나. 종량제봉투 용량 변경: 100ℓ → 75ℓ(안 별표2, 별표3)
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3. 근거법규: 따로 붙임

가.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2019.03. 환경부)
나.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다.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2019.04.08. 환경부)

4. 개정규칙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1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참조: 환경관리과장, 전화 226-5771, 팩스 226-5263)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6. 참고사항

개정 규칙안은 우리구 홈페이지(http://www.ulsannamgu.go.kr)에 첨부물로 올려놓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남구청 환경관리과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의 견 서

조 례 명	울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관련 조문	검 토 의 견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4월 일

제출자 (서명)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공사장샐활폐기물”을 “공사장생활폐기물”로, “구청장”을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가정용”을 “일반용”으로 한다.

별표 2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개정>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표(제9조제2호 관련)

(단위: 원)

용도	일반용 봉투		색상	용도	특수규격 봉투 (공사장생활폐기물)		색상
구분 / 용량	판매 수수료	판매 가격		구분 / 용량	판매 수수료	판매 가격	
5리터	14	160	흰색 (반투명)	30리터	195	2,160	엷은 녹색
10리터	28	310	흰색 (반투명)				
20리터	54	600	흰색 (반투명)	50리터	314	3,480	엷은 녹색
50리터	134	1,490	청색				
75리터	200	2,220	청색				

※ 판매가격에는 판매 수수료가 포함된 가격임.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별표 4] <개정>

쓰레기봉투 무게 상한(제2조제2항 관련)

용 량(ℓ)	50ℓ	75ℓ	비 고
무게 상한	13kg 이하	19kg 이하	

※ 폐기물 배출 밀도를 0.25kg/ℓ 이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생활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① 「울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1조제2항에 따른 대형폐기물, 공사장샐활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자는 주소, 성명, 연락처, 배출일자, 폐기물의 종류, 예상물량 등을 전화, 구술 또는 서면으로 구청장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생활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① ---------- 공사장생활폐기물 ----------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종량제봉투 대금 지원) ①·② (생 략)	제13조(종량제봉투 대금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종량제봉투 지원대상자에게는 가정용 종량제봉투 1인당 월 60리터(20리터 봉투 3매 판매가격) 기준으로 종량제봉투 또는 이에 상당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③ ---------- 일반용 ----------.

신·구조문대비표
(별표2, 별표4)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표(제9조제2호 관련)

(단위: 원)

용도 / 구분 용량	일반용 봉투 판매 수수료	일반용 봉투 판매 가격	색상	용도 / 구분 용량	특수규격 봉투 (공사장생활폐기물) 판매 수수료	특수규격 봉투 (공사장생활폐기물) 판매 가격	색상
5리터	14	160	흰색 (반투명)	30리터	195	2,160	엷은 녹색
10리터	28	310	흰색 (반투명)				
20리터	54	600	흰색 (반투명)				
50리터	134	1,490	청색	50리터	314	3,480	엷은 녹색
100리터	266	2,960	청색				

※ 판매가격에는 판매 수수료가 포함된 가격임.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별표 2]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표(제9조제2호 관련)

(단위: 원)

용도 / 구분 용량	일반용 봉투 판매 수수료	일반용 봉투 판매 가격	색상	용도 / 구분 용량	특수규격 봉투 (공사장생활폐기물) 판매 수수료	특수규격 봉투 (공사장생활폐기물) 판매 가격	색상
5리터	14	160	흰색 (반투명)	30리터	195	2,160	엷은 녹색
10리터	28	310	흰색 (반투명)				
20리터	54	600	흰색 (반투명)				
50리터	134	1,490	청색	50리터	314	3,480	엷은 녹색
75리터	200	2,220	청색				

※ 판매가격에는 판매 수수료가 포함된 가격임.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별표 4]

쓰레기봉투 무게 상한(제2조제2항)

용량(ℓ)	50ℓ	100ℓ	비고
무게 상한	13kg 이하	25kg 이하	

※ 폐기물 배출 밀도를 0.25kg/ℓ 이하

[별표 4]

쓰레기봉투 무게 상한(제2조제2항)

용량(ℓ)	50ℓ	75ℓ	비고
무게 상한	13kg 이하	19kg 이하	

※ 폐기물 배출 밀도를 0.25kg/ℓ 이하

관 련 법 규

□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2019.03. 환경부)

○ 종량제 봉투, 폐가구 등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음식물류 폐기물, 공사장 생활계 폐기물 등 수집·운반 작업(자동상차장치를 활용하지 않는 작업) 중에 미화원 1인이 들기 어렵거나 다음의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작업은 3인 1조 이상(운전원 1, 상차원 2) 작업을 원칙으로 함

※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13호) 제3조(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제8호내지 제10호 해당하는 작업

8.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9.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10.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⑤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2019.04.08. 환경부)

2. 생활폐기물 배출에 관한 사항

가. 종량제 적용대상 폐기물의 배출방법(자동집하시설 설치 경우 포함)

○ 종량제 적용대상 폐기물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작·판매하는 종량제봉투, 배출 스티커 부착 및 기타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

○ 50L 이상 일반용 종량제봉투(사업장생활계 폐기물 포함)로 배출 시 압축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종량제봉투 무게 상한을 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통해 제한

※ (예시) 100L: 25kg 이하, 75L: 19kg 이하, 50L: 13kg 이하(폐기물 배출 밀도를 0.25kg/L 이하)

울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1-561호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4월 2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1. 개정이유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7754호, 2020.12.22.)에 따른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정비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기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인원 확대(안 제2조제1항)

- 위원을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2명 증원

(민간위원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2명 증원)

나.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자격요건 구체화(안 제2조제1항제1호)

- 위원 자격요건을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법관’을 ‘판사·검사·변호사’로 변경하며, ‘시민단체’를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 변경

다. 의회 제출 연차보고서에 ‘주식매각 또는 신탁’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9조)

3. 근거법규

가.「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0조의2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1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참조: 감사관, 전화 226-5353, 팩스 226-525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울산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① 울산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2조(구성) ① ---------- 7명- ----------.
1. 3명의 위원은 법관・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한다.	1.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교육자. ----------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선임한다.	② ---------- --.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3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1. ---------- 5명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② (생 략)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구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9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지방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공직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

근 거 법 규

□「공직자윤리법」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제20조의2(국회 등에 대한 보고)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또는 해당 지방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하거나 제18조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취업할 수 있다고 통지하는 때에는 그 결과를 포함한다)와 감독, 그 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